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편집인	공보실장 최철호
	우안쇄사

차 례

△ 조 례.....	3
제 510 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제 511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제 512 호 서울특별시 사환곡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제 513 호 서울특별시 농가대여양곡조례중 개정	
제 514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	
제 515 호 서울특별시립 양노원 설치조례	
제 516 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의계설치조례중 개정	
제 517 호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 설치조례중 개정	
제 518 호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 수수료 징수조례	
제 519 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설치 조례	
제 520 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설치 조례중 개정	
제 521 호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규 칙.....	30
제 687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688 호 소방관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전중 개정	
제 689 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직제	
제 690 호 서울특별시 구과실계별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제 691 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직제	
제 692 호 서울특별시 분뇨수거 수수료 과장 규칙	

(2) 차 례

제 693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중 개정	
제 694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관리규칙중 개정	
제 695 호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훈 령	60
제 247 호	서울특별시 구의중합순환제 운영규정 폐지	
△사 령	61
△고 시	67
제 1 호	1968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고시	
제 2 호	일단의주단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제 3 호	일단의주단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제 4 호	일단의 불량지구 개량사업 집행자 지정	
제 5 호	사료성근 등록	
제 6 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제 7 호	사방지정시 해제	
제 8 호	수도사업은 명칭및 위치고시	
△공 고	77
제 1 호	세목공고	
제 2 호	세목공고	
제 4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제 8 호	청산수입 고지서 공시송달	
제 9 호	세목공고	
제 13 호	세목공고	
제 14 호	세목공고	
제 15 호	세목공고	
제 19 호	청산금결정액 통지서 공시송달	
제 21 호	신당 청량리 면목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연기	
△판 고	100
1.	관인 개인에 따른 공고	

조 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 使用料徵收條例의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西紀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0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 使用料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 (使用料의 減免) 市長이 公用, 公益 또는 其他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때는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으며 減免額 10萬圓 未滿의 것은 運動場長에 委任한다. 다만 무료觀技時의 使用料의 減額은 5%를 超額하지 못하며 特別한 事由라 함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別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一陸上觀技場(蹴球場包含)

(1) 陸上觀技場을 專用으로 使用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一表

區 分	無 料 時 (基本額)				備 註
	陸上運動場		足球運動場		
	土 日	公 平	土 日	公 平	
1. 體育觀技	11,000	9,000	9,300	7,200	觀技時 次入場者 100人 以下 1,000圓 以上 2,000圓 以下
2. 體育以外의 目的	78,000	60,000			48,000圓 以下

다만 서울運動場 잔디구라운드使用時 體育觀技의 限하여 土, 日, 公休日은 26,000원 平日은 20,000원으로 한다.

(2) 陸上觀技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使用코져 할 때는 다음과 같다.

(4) 조 제

第二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個人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1/2時間當	40원
2.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2時間當	1,200원

(3) 使用時間을 晝間 08:00부터 18:00, 夜間 19:0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때 晝間使用을 連續하여 延長할때는 1時間當 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徵한다.

第二野球場

(1)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三表

區 分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期
	土, 日, 公休日		平 日			
	晝 間	夜 間	晝 間	夜 間		
1. 體育競技	11,700	11,700	9,000	9,000	觀覽料收入 專用日로부터 額의 2割까지 7日以前 當額	
2. 體育以外의 目的	78,000	78,000	60,000	60,000		

(2)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져 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四表

區 分	時 間	料 金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2時間	1,200원

(3) 使用時間은 晝間 08:00부터 17:30, 夜間 18:30 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때에는 時間當 夜間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徵한다.

但 使用者一覽表에 夜間使用豫約者가 없을때에는 日設時까지 繼續된때에 限하여 晝間料金の 1)分之1을 追徵한다.

(5) 夜間使用時間에는 練習을 爲한 利用許可를 하지 않아한다.

第三 庭球場 및 排球場

(1) 庭球場 및 排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五表

區 分	場 所	無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費
		土.日.公休日	平 日	
1. 庭球競技 및 排球	庭球場	2,800	2,100	觀覽料收入 專用日 로 부
	排球場	2,200	1,700	
2. 前項 以外의 體育競技	庭球場	4,500	3,500	觀의 2割 但 7日 以前 該金額
	排球場	3,700	2,800	
3. 前各項 以外의 目的	庭球場	28,000	21,000	
	排球場	18,000	14,000	

(2) 庭球場 및 排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 코거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六表

區 分	時 間	納 費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2時間 1시간 當	400원

(3) 使用時間은 晝間 08:00부터 18:00 夜間 18:0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 때 晝間 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는 1時間 當 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徵한다.

第四 水泳場

(1) 水泳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七表

區 分	無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費
	土.日.公休日	一 般 用 戶 當 次	平 日	一 般 用 戶 當 次	
1. 水泳場으로 使用할 때	23,400	5,200	18,000	4,000	觀覽料收入 專用日 로 부
2. 水泳 以外의 體育 競技	15,600	3,380	12,000	2,600	觀의 2割 但 7日 以前 該金額
3. 體育 以外의 目的	31,200	11,700	24,000	9,000	當額

(6) 조 례

(2) 水泳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저 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八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一 般 科	1/2時間當	40원
2. 兒 童 科	"	20원

(3) 專用時間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때 午前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때는 1時間當 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徴한다.

第五 卓球練習場

(1) 卓球練習場을 利用코저 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九表

區 分	時 間	料 金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1臺當1時間	60원

(2) 1時間未滿인 것은 1時間으로 한다.

第六 冬季스케이트場

(1) 冬季스케이트場을 専用으로 使用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表

區 分	無 料 時(基本額)		有 料 時	納 期
	土, 日, 公休日	平 日		
冬季各種競技	26,000	20,000	觀覽料收入額	專用日로부터 7의 2割以上額 日以前

(2) 冬季스케이트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저 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一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一般人的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1人2時間當	40원
2. 兒童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	30원

第七 獎忠體育館

(1) 獎忠體育館을 專用으로 使用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二表

區 分	無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期
	土 日 公休日		平 日		
	晝 間	夜 間	晝 間	夜 間	
1. 體育競技	11,700	19,500	9,000	15,000	觀覽料收入 專用日로부터 2 星期 內 行하되
2. 體育以外의 目的	58,500	84,500	45,000	65,000	常額

(2) 獎忠體育館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三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個人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1人時間當	400원
2.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2時間當	1,600원

(3) 使用時間을 晝間 08:00부터 17:00, 夜間 19:0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때 1時間當 夜間使用 金額의 10分之1을 追徵한다.

第八 商行爲上의 使用料

(1) 競技 또는 集會를 中繼放送케 한 專用者는 二로부터 徵收한 金額의 2%를 使用料로 納付하여야 한다. 그 金額이 다음 金額의 未滿하거나 徵收한 金額이 없을때는 基本額을 徵收한다.

다만 아마추어 國內競技의 境外에 放送中繼料를 받지 아니할때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各競技場에서 商行爲를 하고자 할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四表

種 別	區 分 期 間	基 本 額	備 考
부 르 레 스 링	國際競技 國內競技	40,000 15,000	

< 8) 조 례

T V 中 繼 放 送	아 로 拳 闘	"	40,000	
	"	"	15,000	
	龍 球	"	20,000	
	"	"	5,000	
	野 球	"	20,000	
	"	"	5,000	
	蹴 球	"	30,000	
	"	"	5,000	
	排 球	"	10,000	
	"	"	2,500	
아 마 추 어 拳 闘	"	15,000		
"	"	3,000		
其 他 競 技	"	5,000		
"	"	1,000		
映 畫 攝 影		1回當 20,000원		
中 繼 放 送		TV中繼料의 半額으로 한다		
競 技 攝 影		TV中繼放送金額으로 한다		
宣傳, 廣告, 招示, 展覽, 契約者의 年間計劃書에 依한 總收入金의 2割 物 件貸與, 其他行爲				

第九 入場料

運動場의 入場料는 다음과 같다.

入 場 料	1 人 1 回	10원
-------	---------	-----

(1) 賦割制使用者가 200,000원을 超過할 時는 다음 減額率에 依하여 割引한
다.

$$\text{減額率} = \frac{\text{使用料} - 200,000\text{원}}{1,000} \times \frac{1}{1,000}$$

$$\text{減 額} = \text{使用料} \times \text{減額率}$$

例 示

使 用 料	割 引 率	減 額	納 税 額
200,000원			20,000원
300,000	10%	30,000원	270,000
400,000	20%	80,000 "	320,000
500,000	30%	150,000 "	350,000

(2) 賦割制使用料가 50萬원을 超過할때는 3割을 割引한다.

第十一 附屬設備使用料

(1) 運動場(體育館包含)의 附屬設備을 使用할 때는 下表에 依하여 別途徵收한다.

種	別	區	分	金	額	備	要
附 屬 設 備	野球場라이트設備使用料	1回		電氣使用料基本料(28.000) 各競技日의電氣使用料 (官許料金)			
	擴聲機	1回(適當)		1.000원			
	競技場照明	KW		官許料金			
	冷房	房	"	"		1時間, 1000 원에서 1時間 으로 再改定	
	暖房	房	1時間	3.000원			

附 則

- ① (施行日) 이 條例은 公布한날로 부터 施行한다.
- ② (經濟措置) 必히 運動場使用許可를 받고 使用料를 納付한것에 對하여는 이條例에 依한 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을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3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1號

서울特別市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 手數料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各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1. 租稅와 公課에 關한 證明 | 1부 10원 |
| 2. 納稅管理人에 關한 證明 | 1부 10원 |
| 3. 實產에 關한 證明 | 1부 20원 |
| 4. 土地建物 船舶과 車輛에 關한 證明 | 1부 16원 |
| 5. 建築敷地에 關한 證明 | 1부 20원 |
| 6. 換地에 關한 證明 | 1부 20원 |
| 7. 營業 畢業에 關한 證明 | 1부 20원 |
| 8. 身元에 關한 證明 | 1부 20원 |

(10) 五 則

9. 諸資格에 關한 證明	1件 10원
10. 居所에 關한 證明	1件 10원
11. 兵事에 關한 證明	1件 20원
12. 死産에 關한 證明	1件 10원
13. 埋葬火葬에 關한 證明	1件 10원
14. 財産管理人和 破産管理人에 關한 證明	1件 10원
15. 印鑑에 關한 證明	1件 20원
16. 公簿의 圖面의 閱覽 1冊 또는 1張	1件 5원
17. 公簿의 謄本 抄本 下附 原本1張	10원
18. 土地 建物의 圖面의 謄本 下附 原本1張	20원
19. 課稅物件에 關한 證札再3紙	20원
20. 道路, 溝渠의 境界線, 計劃線 또는 建築線 測量	1筆 180원
21. 前號에 規定한 測量圖面의 謄本 下附 原本1張	20원
22. 換地豫定分割	1筆 50원
23. 換地豫定地에 對한 從前土地分割	1筆 50원
24. 國際婚姻申告證明	1件 1,400원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社選穀管理條例廢止에 關한 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512號

서울特別市社選穀管理條例廢止에 關한 條例

1965年12月16日字 서울特別市條例第414號 서울特別市社選穀管理條例는 이 를 廢止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農家貸與糧穀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3號

서울特別市農家貸與糧穀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農家貸與糧穀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從來社選穀으로 運賃된 糧穀은 農家貸與糧穀에 移轉하여야 하며 移轉된 糧穀은 이 條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貸與 또는 保儲된 것으로 본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河川占用料徵收條例를 이의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4號

서울特別市河川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河川占用料等 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市長은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占用料金等の 1/2 또는 全部를 減免할 수 있다.

第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의2 (占用料等の 徵收) 占用料等 滯納에 關하여는 國稅滯納者의 例에 依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延滯金處理) 市長은 占用料等を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滯留狀을 發付하고 그 指定期日內에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占用許可를 取消하고 原狀復舊 또는 撤去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市長이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納付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第6條 (占用料의 追認)을 第6條(追徵金)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

이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追徵金은 第2條에 依한 占用料金等(以下 一般占用料金等이라함)의 3倍의 範圍內에서 追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다만 市長이 特別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追徵金의 一部 또는 全部를 減免할 수 있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立 養老院設置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5號

시立特別市立養老院設置條例

第1條 (目的) 無依無托인 老人을 爲하여 情緒的이고 安樂한 生活을 할 수 있는 養老施設을 設置함에 依함으로서 社會福祉增進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設置) 서울特別市 養老院(以下 養老院이라 한다)은 서울特別市城北 區계洞山51番地에 둔다.

第3條 (公務員) ① 養老院을 管理運營하기 爲하여 院長을 두되 地方行政 事務官 또는 地方行政 主事로 補한다.

② 院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院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院長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

第4條 (施行規則) 養老院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6號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第 1 條 第24號 다음에 다음 各號를 新設한다.

- 25. 京仁土地 區劃整理事業
- 26. 永東土地 "
- 27. 始興土地 "
- 28. 道峰土地 "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 婦女事業館設置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7號

서울特別市立婦女事業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立 婦女事業館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 第 3 條 ① 事業館에 館長을 두되 館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任한다.
- ② 館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館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③ 館長 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

第4條를 다음과같이 한다.

第 4 條 事業館에서 兒童의 受託保護를 許諾받은 자는 다음의 受託料을 支納하여야 한다.

受 託 料 月 500원

附 則

이 條例는1968年1月10日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土木試驗所 手数料徵收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8號

서울特別市土木試驗所手數料徵收條例

第 1 條 (目的)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 土木試驗所 (以下 試驗所라 한다)에 試驗 또는 調査를 依頼하는 경우 부터 手數料를 徵收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手數料額) 試驗 또는 調査 依頼手數料는 別表와 같다.

第 3 條 (依頼) ① 試驗 또는 調査를 依頼하고자하는者 (以下 依頼者라 한다)는 收入證紙로서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依하여 納付한 手數料는 依頼를 取消 또는 撤回하더라도 이를 還付하지 아니한다.

第 4 條 (試驗을 爲한 調査費의 負擔) 이 手數料 以外에 試驗調査費 또는 必要한 試驗依頼는 試驗所長이 算定하는 調査費물 資材 裝備 및 方法으로 依頼者가 直接 實費負擔하여야 한다.

第 5 條 (試驗利用의 制限) 依頼者는 試驗의 結果를 品質保證, 宣傳其他의 目的으로 外部에 發表 또는 文獻에 公開할 수 없다. 다만 依頼者가 前項의 目的으로 試驗을 依頼할 때에는 試驗所長은 市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6 條 (手數料의 減免) 國庫, 市費 補助工學와 市長이 公用 또는 公益上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 7 條 (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 조사수수료

시 험 항 목	단일조사항목	조사수수료	비 고
1. 돌밀도조사			

	돌밀도조사	520	
2. 지저울조사			
	건축지저울조사	500	
	도로지저울조사	110	
3. 지질탐사			
	흙의 보링	1,300	
4. 기 타	전 각장제 준하의 국립 건설연구소에 의하는 것		
2. 시험수수료			
시 험 항 목	단위식, 항목	단위수수료	비고
1. 토성시험		2,300	
	관수양식량	60	
	단수양식	200	
	압축시험편	100	
	외용한계	300	
	소경한계	100	
	수축한계	200	
	점착시험량	100	
	원심투기시험량	160	
	투수시험	750	

(1 6) 조 제

2. 난크기시험		800	
	침강분속	600	
	채가름	200	
3. 흙의 역학시험		1,840	
	다짐시험	430	
	압밀시험	1,400	
	일축압축시험	300	
	직접 전단 시험		
	가. 급속전단	380	
	나. 압밀급속	830	
	다. 원속전단	1,430	
	삼축압축시험		
	가. 급속	730	
	나. 압밀급속	1,630	
	다. 완속	2,830	
4. 흙의 지저리시험			
	실내지저리시험	600	
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원형설 경시험(배치선택)	3,000	
	콘크리트포용선 경시험	3,700	

	원공돌봄시험	100	
	적기시험	80	
6. 진공제시험		2,640	
	비 중	250	
	물 적 음	250	
	들어우개및기울	330	
	천가통및조립용	200	
	잡 기 량	120	
	길 물 기	160	
	전 달 성	1,200	
	유기량량시험	130	
7. 굵은골제시험		2,960	
	비 중	280	
	물 적 음	270	
	들어우개및기울	330	
	천가통및조립용	240	
	잡 기 량	140	
	달 음	460	
	전 달 성	1,240	

(18) 조 제

8. 강제 시험		450	
	당김 시험	130	
	눌름 시험	130	
	찍기 시험	130	
	구부림 시험	60	
9. 시멘트부록시험		400	
	비 중	110	
	고 르 기	90	
	물 덕 음	100	
	눌름 시험	100	
10. 벽돌시험		410	
	고 르 기	90	
	물 덕 음	100	
	눌름 시험	100	
	찍기 시험	120	
11. 기와시험		190	
	찍기 시험	90	
	물 덕 음	100	
12. 관시험		170	

	농률 시험	170
13. 스테트시험		320
	격기 시험	130
	물 먹 음	100
	충격 시험	90
14. 코아 시험		100
	농률 시험	100
16. 보도용콘크리트판시험		120
	격기 시험	120
17. 시멘트품질시험		2,520
	비중 시험	200
	분말도시험	520
	응결 시간	190
	주 노	1300
	안정도 시험	260
	강도 시험	670
	수화열 시험	370
18. 화학분석시험		2,940
	강령강량시험	190

(20) 조 비

	불용해 잔분	240	
	무수 황산	240	
	산화마그네슘	260	
	실 리 커	240	
	산화알루미늄	260	
	산화제2철	260	
	산화칼슘	260	
	산화나트륨	330	
	산화가륨	330	
	유기물유량	330	
19. 도래의 화학분 석 및 강도시험		1,080	
	강열감량시험	190	
	불용해잔분	240	
	강도시험	650	
20. 시멘트클리 트분 석 시험		1,170	
	시멘트기술용시험	1,170	
21. 아스팔트시멘 트품질시험		1,890	
	침입도시험	190	
	신도시험	250	

	인화검시험	140
	비 중	130
	중발감량시험	140
	중발감량후결입 도시험	560
	연화검시험	250
	사염화탄소에 녹 는율시험	330
	전 시 검	200
22. 액제아스팔트 품질시험		2,770
	인화검시험	150
	검토시험	210
	중류시험	520
	중류잔량	960
	수분시험	260
	부유시험	160
	최소 100의 중 류 잔사 시험	280
	CS에 녹는율시험	330
23. 유제아스팔트 품질시험		3,120
	영결성	320

(2 2) 조 례

	제시업	210	
	침강시험	160	
	물타기 시험	210	
	시멘트용기시험	150	
	얼티기시험	190	
	털질검시험	170	
	중류관사시험	1,500	
	검도시험	210	
24. 아스팔트혼합 제시업			
	마산천리시험 (아프라노콘크리트 배합설계)	2,600	
	혼합제의 아스팔트합 (광아스팔트콘크리트)	910	
	혼합제의 아스팔트합 (광타크 담표중)	4,360	
	혼합제 체재가름	190	
25. 아스팔트피막 박리시험		260	
	피막박리시험	260	
26. 기 타	전 자함에 준하여 국립건설연구소장이정하는 액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漢江建設事業所 設置條例를 이
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9年 1月10日

◎서울特別市條例第519號

서울特別市漢江建設事業所設置條例

第1條 (目的) 政府國土計劃에 聯結되고 그 一環으로서 漢江을 開發하기 爲한 調査, 測量, 設計및 工事의 執行과 其他附帶工事を 管掌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長 所屬下에 漢江建設事業所(以下 事業所라 한다)을 둔다.

第2條 (職務) 事業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漢江利用計劃 및 活用
2. 江邊土地利用計劃 및 建設
3. 堤防構築(近代化)
4. 道路築造(高層有料化)
5. 漢江邊 高層都市建設
6. 其他 島서開發計劃및 建設

第3條 (機構) ① 事業所에 所長 1人을 두되 所長은 2級甲類 또는 2次乙類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② 事業所에는 課를 두되 課長은 3級甲類 一級職 또는 技術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고 各課에는 係를 둔다.

③ 事業所의 課와 係의 名稱과 事務分掌은 따로 市長이 定한다.

第4條 (事業所의 位置) 事業所의 位置는 市長이 따로 定하여 公布한다.

第5條 (施行規則)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別項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68年1月10日부다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 運動場設置條例中 改正案이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王

1968年 1月25日

◎서울特別市條例第520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設置條例中改正案

서울特別市立 運動場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① 運動場을 管理運營하기 爲하여 市立運動場長을 두되 地方行政

配官으로 補하다.

㉔ 場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各運動場을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㉕ 場長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 別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特別市立運動場名稱位置表

名 稱	位 置
서울運動場	서울特別市 卍區乙支路7街1番地
孝昌球場	서울特別市 卍山區孝昌洞山1番地
獎忠體育館	서울特別市 卍區獎忠洞2街4의4號

附 則

이 條例는 1968年2月1日부키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會計關係 公務員 財政保證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31日

◎서울特別市條例第521號

서울特別市 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

第1條 (目的) 이 條例는 卍方財政法 第72條의 規定에 依하여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條例에서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1. 徵收官, 經理官, 物品管理官, 支出員, 出納員 및 有價證券 取扱公務員과 그 代理者 및 分任者
2. 前號의 補助者로서 會計事務의 1部를 總理하는 者

第3條 (財政保證方法) ① 會計關係公務員은 그 職에 任命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財政保證을 하여야 한다.

1. 30萬원以上の 財政保證金 提供
2. 時價 50萬원以上の 不動產(土地, 建物에 限한다. 以下 같다) 擔保

3. 時價 100萬원以上 不動産所有者 2人을 保證人으로서 한 連帶保證書의 提出

4. 保險金額 30萬원以上の 信用保險契約締結

② 前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은 서울特別市內에 所在하여야 하며 그 所有者 또한 서울特別市內에 住所를 가진 者라야 한다.

③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依한 信用保險契約의 締結은 서울特別市長을 被保險人으로서 自己를 保險契約人으로서 하고 保險會社를 保險者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保險의 種類와 會社는 서울特別市長이 推定하는 限에 依하고 保險料는 每月 當該 公務員의 俸給에서 控除拂込하게 한다.

第4條 (財政保證節次) 前條의 規定에 依한 財政保證은 別紙 第1號書式 또는 別紙 第2號書式에 依한 財政保證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付 提出하여야 한다.

1. 財政保證金을 提供할 境遇에는 所定의 現金을 서울特別市(本廳) 歲入 歲出外 現金出納員에게 納付하고 그 納入證明書

2. 不動産을 擔保할 境遇에는 서울特別市長을 擔當者로 한 別紙當職設定登記畢證書와 別紙 第3號書式에 依한 財產評價證書, 이 境遇에 있어서 擔保하는 不動産이 當該 公務員의 所有가 아닌 때에는 그 以外의 그 所有者의 印鑑證明書を 添付하여야 한다.

3. 財政連帶保證人을 세울 境遇에는 各保證人의 印鑑證明書와 別紙 第3號書式에 依한 財產評價證書

4. 信用保險契約을 締結할 境遇에는 別紙 第4號書式에 依한 信用保險契約申請書

第5條 (財政保證의 更新) ① 財政保證은 3年마다 更新하여야 한다. 다만 信用保險에 있어서는 每年 契約의 更新에 依하여 財政保證金의 納付 또는 不動産의 擔保에 있어서는 3年마다 財政保證書를 代替함으로써 更新한 것으로 본다.

第6條 (連帶保證人의 變更) ① 서울特別市長은 連帶保證가 있어서 保證期間中에 保證人의 不動産이 第3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價額에 未達하게 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保證人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

에는 當該 會計關係公務員에게 保證人의 追加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② 會計關係公務員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保證人을 追加 또는 變更하고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財政保證書를 새로이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이 境遇에 있어서의 保證期間은 當初 保證期間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7條 (財政保證金等の 還付) ① 財政保證金 抵當權設定書, 信用保證證券 및 財政保證書는 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을 究한 後 6月이 經過하지 아니하면 이를 還付 또는 抹消할 수 없다.

② 監査院의 監査를 마친 다음 明確한 證明으로서 在職中 責任이 完全히 解消되었다고 認定할 때 또는 特別히 保留하여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前項의 期間을 短縮 또는 延長할 수 있다. 다만 延長期間은 6月以內로 한다.

第8條 (保證金의 辨償充當) ① 會計關係公務員이 地方財政法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辨償責任이 履行되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依하여 辨償金을 充當한다.

1. 第3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保證金を 納付한 境遇에는 그 保證金에서 充當한다.

2. 第3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不動產을 擔保한 境遇에는 그 擔保된 不動產을 競賣한 代金에서 充當한다.

3. 第3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信用保證證券을 提出한 境遇에는 當該 保險金으로서 充當한다.

② 前項 各號의 規定에 依하여 辨償金을 充當함에 있어서 不足이 생겼을 때에는 當該 會計關係公務員으로 부터 追徵하고 殘餘가 생겼을 때에는 各其 그 所有者에게 還付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辨償金에 充當할 때에는 財政保證의 利害關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9條 (財政保證金等の 管理) ① 財政保證金信用保證證券, 財政保證書, 其他 財政保證에 關한 事項의 立證에 供한 書類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以下 財政保證管理責任者라 한다)이 管理한다.

- ② 財政保證管理責任者は 財政保證金에 있어서는 이를 서울特別市金庫에 預入하여야 하며 信用保證書 및 財政保證書 其他 書類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 義務를 다하여 整備保存하여야 한다.
- ③ 財政保證管理責任者は 被保證人의 身分의 變更이 生하였을 場合에는 그 時를 그때마다 財政保證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2月1日부터 施行한다.
- ② (廢止條例) 서울特別市 第1號 서울特別市 身元保證條例는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 ③ (經過措置) 이 條例施行當時 이미 提出된 身元保證書는 이 條例의 效力에 의하여 提出된 것으로 본다.

別紙第1號書式

財 政 保 證 書

貼 收
入
印
紙

被保證人	本 籍			
	住 所			
擔保하는保證物	姓 名		生年月日	
	種 別		金額正當價 類	
擔保하는保證物	添 附 書 類			
	不 動 產 坐地番 坪 建物番 坪			
擔保하는保證物	所 有 者 姓 名	本人-擔 保 類		

위의 被保證人의 地方財政法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擔保責任이 發生되 있을 때에는 서울特別市 會計關係公務員 財政保證條例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負擔保 또는 保證物(財政保證金, 信用保證金, 不動產)을 任意爲擔保價金에 充當하여도 同等 異議가 없아음기 서울特別市 會計關係公務員 財政保證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證書를 提出하나이다.

年 月 日

所 屬 職 名

姓 名 印
 所有者住所 서울特別市 區 洞 番地
 姓 名 印

서울特別市長 黃下
 別紙第1號書式裏面

身 上 異 動 狀 況

發 年	令 月	所 日 (勤務處)	職 名	會 計 職 名	臺 連 番 號	限 有 効 期 間	取 權	披 者 認

○ 前面에 對한 記載要領

1. 種別欄에는 “財政保證書”, “不動產”, “信用保險”으로 表記함.
2. 添附書類欄에는 이 財政保證書에 添附된 書類名을 表記함.
3. 不動產欄에는 不動產을 擔保했을 때에 限하여 記載함.
4. 所有者姓名欄에는 不賡賡을 擔保했을 때에 限하여 本人(被保證人)의 所有인 때에는 “本人”이라 表記하고 本人의 所有가 아닌 때에는 그 姓名을 記載하고 本人과의 關係欄을 明記함.

別紙第2號書式

財 政 保 證 書

被 保 證 人	本	籍			
	住	所			
	姓	名	生年月日		
	所	屬	職 名		

위의 被保證인이 地方財政法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辨償 責任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本人等이 被保證인과 連帶하여 辨償하겠아음기 서울特別市 會計

關係 公務員 財政保證條例의 定하는 下에 於하여 이 證書를 提出하나다.

年 月 日

本 籍

住 所

被保證人姓名

印

生年月日

本 籍

住 所

連帶保證人姓名

印

生年月日

本 籍

住 所

連帶保證人姓名

印

生年月日

서울特別市長 黃下

別紙第3號書式

財 產 評 價 調 書

所有者住所

姓 名

· 不動產表示

所 在 地	地 番 種 別	面 積	評 價 額	備 註
計				

2. 用途 및 提出處 財政保證用으로 서울特別市에 提出함.

上記 財産은 財務部長官이 定한 不動產評價基準價格表에 於하여 評價함

年 月 日

〇〇 區 廳 長 印

別紙第4號書式

信用保險契約申請書

- 1. 保險金額
- 2. 保險會社名

서울特別市 會計關係公務員 財政保證條例의 規定에 依하여 위와 같이 信用保險에 加入코자 하오니 契約를 締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年 月 日

所 屬

職 名

姓 名

印

서울特別市長 貴下



서울特別市職制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 9日

◎서울特別市規則第687號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 第2項 第4號에 “사”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사. 公務員의 海外派遣者 推薦

第10條第2項中 “管財課長은 行政書記官”을 “管財課長은 行政書記官 또는 財經書記官”으로 한다.

第1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都市計劃局) ① 都市計劃局에 庶務課, 計劃課, 區劃整理課, 建築課, 住宅行政課와 住宅建設課를 둔다.

② 局長은 施設技監 또는 施設副技監으로 庶務課長과 住宅行政課長은 行

政書記官으로 計劃課長과 區劃整理課長은 土木技正으로 建築課長은 建築技正으로 住宅建設課長은 土木技正 또는 建築技正으로 補한다.

③ 住宅建築事務를 專擔補佐케 하기 爲하여 局長 밑에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 1人을 들수 있다.

第18條의 2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中 「住宅課」를 「住宅行政課」로 하고 第2項第3號와 第4號를 削除하고 第5號를 第3號로 한다.

① 住宅行政課에 住宅係 住宅管理係와 商街住宅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第18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의 3 (住宅建設課) ① 住宅建設課에 宅地造成係 建築工事係와 設備係를 두고 宅地造成係長은 地方土木技佐로 建築工事係長은 地方建築技佐로 設備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機械技佐로 補한다.

② 住宅建設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宅地造成係

- 가. 宅地造成에 關한 設計 施工監督
- 나.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建築工事係

- 가. 市營住宅의 建築에 關한 設計 施工監督
- 나. 住宅建築技術改良向上의 研究

3. 設備係

- 가. 市營住宅 建築工事의 附帶設備의 設計 施工監督

第19條 第1項中 「運輸行政課」를 「運輸第1課, 運輸第2課」로 하고 第2項中 「運輸行政課長」을 「運輸第1課長 運輸第2課長」으로 하고 第3項을 削除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運輸第1課) ① 運輸第1課에 運輸行政係 運輸運營係와 運輸指導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② 運輸第2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運輸行政係

- 가. 首都綜合交通對策

- 나.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計劃樹立 運賃料金 保險 및 動員
- 다.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組合 및 運輸事業體 指導監督
- 라.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에 關한 統計 및 運行證
- 마. 路線業種, 交通量 및 諸基準의 處理
- 바. 運輸諮問委員會 運營
- 사.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運輸運營係

- 가.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免許, 許可 및 認可
- 나.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讓渡, 讓受認可
- 다. 路線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施設에 對한 研究 設計 및 改良
- 라. 駐車場 停留所 道路標識

3. 運輸指導係

- 가. 自動車運輸事業 司員養成 및 教育
- 나. 配車員 指導監督
- 다. 路線業種 自動車의 運行上 指示違反車輛 團束 및 行政處分

第21條의 2호 第21條의 3호 그리고 第21條의 2호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 2 (運輸第2課) () 運輸第2課에 運輸 第1係와 運輸第2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㉔ 運輸 第2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運輸第1係

- 가. 區域業種 自動車 運輸事業의 綜合計劃樹立 및 運賃料金 保險
- 나. 區域業種 自動車 運輸事業組合 및 運輸事業體 指導監督
- 다. 區域業種 自動車 運輸事業에 關한 統計 및 運行證
- 라. 區域業種 交通量 및 諸基準의 處理
- 마. 區域業種 自動車의 運行上 指示違反車輛團束 및 行政處分
- 바.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運輸第2係

- 가. 區域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免許, 許可 및 認可
- 나. 區域業種 自動車運輸事業의 讓渡 讓受認可

다. 區域業種 自動車 運輸事業의 施設에 對한 研究 設計 및 改良
 第42條第2項中「業務課長은 行政書記官, 財經書記官 또는 地方行政書記官
 으르」를「業務課長은 行政書記官 財經書記官 地方行政書記官 또는 地方財經
 書記官으로」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消防官派出所의 名稱 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規則第688號

消防官派出所의 名稱 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 改正規則

消防官派出所의 名稱 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消防官派出所의 名稱 位置와 管轄區域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消防署名	名 稱	位 置	管 轄 區 域
城東消防署	杏堂派出所	城東區杏堂洞 189의2	杏堂洞 沙千洞 杏孔洞 杏樂洞 杏七 洞 弘登洞 賢仁洞 仁昌洞 仁壽洞 聖水1街 聖水2街 具文1 具文2洞 新陽洞
	聖水派出所	城東區聖水三 地區劃整理地 區第37區劃57 -3號	聖水1街 聖水2街 具文洞 具文2街 新 陽洞
	杏堂派出所	城東區杏堂洞 189의2	杏堂洞 沙千洞 杏孔洞 杏樂洞 杏七 洞 弘登洞 賢仁洞 仁昌洞 仁壽洞

으로

消防署名	名 稱	位 置	管 轄 區 域
永登浦消防署	堂山派出所	永登浦區堂山 洞67-339	堂山1街 2街 3街 4街 5街 6街

		楊平洞1街 2街 3街 4街 5街 6街 加陽洞 麻谷洞 登村洞 鹽倉洞 木洞 新亭洞 新月洞 禾谷洞 空港洞 內鉢 山洞 外鉢山洞 果海洞 傍花洞 開花 洞 五鉢洞 五谷洞
"	禾谷派出所 永登浦區禾谷洞24番地내 61의 8號	加陽洞 麻谷洞 登村洞 영창洞 木洞 新亭洞 新月洞 禾谷洞 空港洞 內鉢 山洞 外鉢山洞 果海洞 傍花洞 開花 洞 五鉢洞 五谷洞
	堂山派出所 永登浦區堂山洞67-33	堂山洞1街 2街 3街 4街 5街 6街 楊平洞1街 2街 3街 4街 5街 6街

로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漢江建設事業所職制를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0日

◎서울特別市規則第689號

서울特別市漢江建設事業所職制

第 1 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漢江建設事業所 (以下 事業所라 한다)의 組織과 事務分掌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所長) ① 事業所의 所長은 두고 所長은 地方理事官 地方技監, 地方副理事官 또는 地方副監으로 補한다.

② 所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所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 3 條 (公務員) 事業所의 所長以外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4 條 (課의 設置) 事業所에 管理課, 計劃調查課와 工事課를 두고 管理課

長은 地方行政書記官으로 計劃調査課長과 工事課長은 地方土木技正으로 補한다.

第 5 條 (管理課) ① 管理課에 庶務係, 管理係와 實材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② 管理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庶務係

- 가. 文書, 官印 및 機密
- 나. 人事, 服務, 給與 및 厚生
- 다. 備品管理
- 라. 工事地區內 用地買受 및 補償
- 마. 用地의 分讓 및 貸付
- 바. 道路, 河川敷地 占用 및 其他用地에 關한 專項
- 사. 豫算 및 會計
- 아. 課內庶務와 他課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管理係

- 가. 勞務者動員 및 供給計劃
- 나. 勞務員宿食管理
- 다. 建設工事用裝備의 購入, 調整과 出納
- 라. 裝備의 運營 및 整備
- 마. 其他 裝備에 關한 事項

3. 實材係

- 가. 各種 實材의 購入, 調整과 出納
- 나. 倉庫管理
- 다. 土管 및 부속類의 製作 設計監督
- 라. 建設工事用 石材의 生産
- 마. 生産品出納

第 6 條 (計劃調査課) ① 計劃調査課에 調査計劃係와 設計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土木技佐로 補한다.

② 計劃調査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調査計劃係

가. 漢江의 綜合開發計劃과 土地利用計劃

나. 調査測量

다.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設計係

가. 土木工事設計

나. 工事檢査

第7條(工事課) ① 工事課의 工事第一係와 工事第二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 土木技佐로 補한다.

② 工事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工事 第1係와 工事 第二係의 擔當事務는 同一하되 地區別로 分掌한다.

1. 工事第1係와 工事第2係

가. 地區內 工事施工監督

나. 地區內 土地整理計劃및 施工監督

다. 地區內 道路, 橋梁, 下水施設의 維持管理

라. 課內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工事第1係에서分掌)

第8條(地區의指定) 前條의 規定에 依한 地區의 指定은 所長이 이를 行한다.

第9條(職務代行) 所長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管理課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區課係別事務分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7年 1月10日

◎서울特別市規則第690號

서울特別市區課室係別事務分掌規則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區課室係別事務分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中 “公報係”를 “企劃係”로 하고 第2項第1號 總務係 分掌事務中

“바出張所 및 公共團體의 指導監督”을 “바 公共團體의 指導監督”으로 “자 區
檢 및 統計에 關한 事項”을 “자 區當에 關한 事項”으로 第2項 第2號 洞政係分掌
事務中 “가 洞의 指導監督”을 “가 出張所 및 洞의 指導監督과 人事提請”으
로 하고 第2項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企劃係

- 가. 區政基本運營計劃樹立 및 綜合調整
- 나. 豫算과 事業優先順位決定
- 다. 重要計劃樹立에 關한 調整控制
- 라. 區政綜合施策에 必要한 資料蒐集及 整理
- 마. 區施策과 企劃施行의 査定分析 및 評價
- 바. 法務에 關한 事項
- 사. 統計에 關한 事項
- 아. 非違公務員(陣濟, 投書)의 調査
- 자. 公報宣傳
- 차. 公演에 關한 事情
- 카. 各種公告
- 타. 刊行物發刊
- 파. 輿論調査
- 하. 姉妹結緣

第14條 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 (區의 出張所) ① 區의 出張所に 總務係, 產業係, 稅務係, 賦課係, 徵收係, 社會係와 戶籍係를 두고 總務係長, 社會係長과 戶籍係長은 地方行政主事로 產業係長은 地方行政主事 또는 地方農業技士로 稅務係長, 賦課係長과 徵收係長은 地方司稅主事로 補한다.

② 區의 出張所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과 같다. 다만 恩平, 崇仁 出張所의 稅務係를 두지 아니하고 千戶, 松坡, 彦州, 蘆海, 新東 및 陽山 出張所에는 賦課係와 徵收係를 두지 아니하고,

松坡, 彦州, 崇仁, 恩平 및 新東 出張所에는 社會係를 두지 아니하고 그 事務를 總務係에서 分掌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運動場職制를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2日

◎서울特別市規則第691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職制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 (以下 運動場이라 한다) 의 組織과 事務分掌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場長) ① 運動場에 場長을 두되 場長은 地方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

② 場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場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條 (運營官) 場長을 補佐하게 하기 爲하여 運營官을 두고 運營官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第4條 (公務員) 運動場에 場長과 運營官以外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5條 (下部組織) ① 運營官 밑에 運營係 經理係와 技術係를 두고 運營係 長은 地方行政主事로 經理係長은 地方行政主事 또는 地方財經主事로 技術係長은 地方機械技士로 補한다.

②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運營係

가. 文書. 官印

나. 人事

다. 物品管理

라. 各 경기장의 使用許可

마. 入場券의 檢印

바. 附屬施設(食堂, 寢店等)의 進營

사. 其他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經理係

- 가. 豫 算
- 나. 會 計
- 다. 賣 票
- 라. 使用料收納

3. 技術係

가. 建築物 附帶設備과 競技施設의 設計工事 維持管理補修

第6條 (管理長) ① 各競技場에는 管理長을 두고 管理長은 地方行政事務로 補한다.

② 管理長은 場長의 命을 받아 當該 施設物의 管理과 競技場(運動場)內의 配置된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7條 (競技場) 競技場의 名稱과 位置는 別表와 같다.

第8條 (職務代行) ① 場長有故時는 運送官이 場長과 運送官이 有故時는 運營係長이 그 職務을 代行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規則은 西紀1968年2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程) 서울特別市立運動場職制(1962.9.19 市規則第275號)는 此을 廢止한다.

競技場의 名稱 및 位置表

別表

名 稱	位 置
서울 運動場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7街1番地
孝 昌 球 場	서울特別市 龍山區 孝昌洞31番地
獎 忠 體 育 館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4의1號

서울特別市糞尿收去手数料課徵規則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

西紀1968年 1月3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92號

서울特別市糞尿收去手数料課徵規則

第1條 (適用)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 汚物收去手数料 徵收條例 第3條의 規

定에 의하여 糞尿收去手數料 賦課, 徵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課徵權) 糞尿收去手數料의 賦課徵收는 洞長이 管掌한다.

第 3 條 (定義) 이 規則에서 多量排出이라 함은 一般家庭을 除外한 公共團體 또는 各種業所로서 1日 平均 18ℓ (1桶) 以上の 排出處를 말한다.

第 4 條 (調定카드備置) 洞長은 糞尿排出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糞尿收去手數料 調定카드(書式 第1號 1.2)를 一般家庭과 多量排出處로 區分하여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第 5 條 (一般家庭收去手數料 調定) ① 洞長은 納期開始 20日 前까지 調定카드에 依하여 調定明細書 및 調定決議書(書式第2號의1 第3號의1)를 作成完了하고 遲滯없이 調定決議結果를 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納期開始前後 發生한 隨時調定分에 對하여는 每月末 報告하여야 한다.

③ 區廳長은 前項의 報告狀況을 一括하여 每月末 洞別 明細表(書式 第4號의1)를 作成하여 翌月 5日까지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6 條 (多量排出收去手數料 調定) ① 洞長은 每月의 多量排出處收去手數料를 調定카드에 依하여 調定한다.

② 調定카드는 收去確認票에 依하여 收去量을 正確하게 記錄하여야 한다.

③ 調定은 每月末日에 이를 稽勘하여 翌月 1日에 調定明細書 및 調定決議書(書式第2號의2 第3의2)를 作成完了하고 遲滯없이 調定決議結果를 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 區廳長은 前項의 報告狀況을 每月末 洞別 明細表(書式第4號의2)를 作成하여 翌月5日까지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7 條 (告知) ① 洞長은 調定決議完了 即時 告知書(書式第5號)를 作成하고 一般家庭收去手數料는 納期開始 10日 前까지 多量排出處收去手數料는 每月3日까지 納付義務者에게 發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告知書는 洞職員 (以下 徵收員이라 한다.) 이 配付하고 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第 8 條 (徵收方法) ① 手數料는 洞事務所에서 收納한다.

② 洞長은 徵收員으로 하여금 納付者를 直接訪問하여 徵收하게 할 수 있다.

③ 前項의 手數料를 徵收할 때에는 領收證 (書式第6號)을 交付하여야 하며 洞長은 徵收員으로 부터 徵收한 當日收納金을 收入原簿 (乙) (書式第6號)에 日計表를 (書式第8號) 添付하여 引受하여야 한다.

④ 洞長은 手數料를 徵收하였을 때에는 即時 (書式第3號의 1 第3號의2)의 消印하여야 한다.

第9條 (領收證書의 交付) ① 領收證書는 區廳長이 洞長에게 支給하고 別別支給臺帳에 記載하고 領收證을 받아야 한다.

第10條 (徵收金拂込) 洞長은 徵收한 手數料를 收納當日 또는 翌日 10時까지 納付書 (書式第7號)와 領收證書와 日計表와 收入原簿 (乙)를 添付하여 區廳長에게 拂込하여야 한다.

第11條 (徵收報告) 洞長은 徵收日報 (書式第9號)을 作成 區廳長에게 報告하고 區廳長은 徵收旬報를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2條 (集計簿備置) 區廳長은 洞別徵收實績을 整理하기 위하여 集計簿 (書式第10號)을 備置 整理하여야 한다.

第13條 (納期逾期整理) 洞長은 納期가 滿了되던 未徵收 手數料 金額과 拂込件數 및 金額의 總額이 規定額과 一致한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第14條 (滯納整理) 洞長은 手數料의 滯納이 있을 場合에는 滯納明細書 (書式第11號의1第11號의2)에 加算金을 測定記入하고 滯納狀 (書式第12號)을 發付하여야 한다.

第15條 (滯納督勵) ① 洞長은 滯納手數料를 每月末 調査하여 督勵勸導을 하여야 한다.

② 洞長은 月1回以上 未納件數와 金額을 收納簿의 未單件數 金額과 對照 確認하여야 한다.

第16條 (收納 및 領收證) ① 徵收員은 手數料를 收納하고 領收證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徵收員은 所定の 領收證以外에 如何한 方法으로라도 手數料를 徵收할 수 없다.

第17條 (徵收員의 責任) 切取한 領收證은 手數料을 徵收한 것으로 보며 拂込 件數金額과 未徵收 件數 金額이 相馳할 境遇에는 徵收員은 이에 對한 責任을 진다.

第18條 (手數料의 減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手數料을 減免할 수 있다.

1. 要救護者
2. 年令3歲未滿의 者
3. 家屋이 滅失되었거나 使用不能 일때

附 則

이 規則은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一般家庭收去手數料調定키

式第1號의1

區 河事務所

住所 서울特別市 區 洞 街 番地 (統 班)		備考	
代表家口主 姓名			
年度 및 期別	年度	年度	年度
	期分	期分	期分
賦課人員	人	人	人
金 額	원	원	원
調 定 內 幕	期 間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家口主姓名		
	家口主姓名		
	家口主姓名		
	計		
調 査 者			

多量排出處收去手數料調査카드

表式第1號의2

所在地 서울特別市 區 洞 街 番地 (統 元)														
象態			通國名 (商號)				代表者姓名							
期 別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1 1 定 值 日 排 出 推 算 考
收 去 量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金 額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調 定 內 容 (收去量)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計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斗	
調 査 者														

(表式第2號의1)

일반가정수거수수료 수입조정결의서

196 년 월 일

조정일자 196 . . .

납부기간 196 . . .

건 수	금 액	비 고

계 사무장 순 간 결

(44) 구 회

(舊式第2號의2)

多量排出處收去手数料收入調定決算書

196 年 月分

調定日字 196

納付期限 196

件 數	收 去 量	金 額	備 考

係	學務長	洞 長	결
			제

(舊式第3號의1) 수납부

일반가정수거수수료조정명세서

계 기분

번	호	등	금	금	이	가	산	금	납 부 자		수	납	수	납	비	고	
									성	명							주

註 : 조정명세서를 甲乙紙로 하여 "甲"은 조정명세서 "乙"은 수납부로 사용함

(舊式第 3 號 42)

多量排出處收去手數料測定明細書

(洞)

(頁)

番 番	號 號	給 付 者		收 去 量 測 定 數	收 納 日 期	備 考
		所 在 地 統 一 性 機 關 名	姓 名			

註：測定明細書 甲、乙紙に於て“甲”は測定明細書“乙”に收納簿に使用す
(舊式第 3 號 41)

一般家庭收去手數料洞別明細表

洞 別	件 數	測 定 量	收 納 日 期	備 考
計				

(46) 附 表

(舊式第4號의2)

多量非出處收去手數料洞別明細表

洞 別	件 數	收 去 量	調 定 額	備 考
			斗	원
計				

(舊式第5號)

종 목	기분		교 지		액		주소	성명	기관명	수령인	고지서	전달자	사	유
	196년	수시	진개	분보	계	로								
송 달 증 오물수거수수료	책	호	진개	분보	계	로	주소	성명	기관명	수령인	고지서	전달자	사	유
			만											
			천											
			백											
진개분보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원 부	종 목	196년	기본 수시	교 전	지 계	영 분	주 계	성 로	명 가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원부
	책	호	번	번	번	번	번	번	번	
	전계분노	호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남 입 고 지 서	종 목	196년	기본 수시	금 전	이 계	주 계	성 로	명 가	남부장소	동사무소
	오물수거수수료								남부기합	196년 1월 1일
	책	호	번	번	번	번	번	번	상기금이 납부되었을 바	입니다
	전계분노	호	번	번	번	번	번	번	196년 1월 1일	납부

(術式第6號 (甲))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원부

책	호	번	번	번	번	번	번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	번	번	번
남부자성명							
구	분	동	번	번	번	번	번
오물수거수수료							
일반회계 분요수거수수료							
계							
상기와 여러 누납하였음							

196

0676

(48) 규 칙

서울특별시		동 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舊式第6號(乙))

오월 수거수수료수입원부

계	호	책	진 개	번	진 개
		호	분	호	분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남부자성명					
구	분	종	목	년	도
일	반	회	계	진개수거수수료	분금
				분료수거수수료	액
				계	가 산 금
상기와 여러 수납하였음					
196					
서울특별시		동 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舊式第6號(丙))

오월 수거 수수료 수입보고서

계	호	책	진 개	번	진 개
		호	분	호	분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남부자성명					
구	분	종	목	년	도
일	반	회	계	진개수거수수료	분금
				분료수거수수료	액
				계	가 산 금

상기 금액 영수 하있음
196
서울특별시 동수업금융남원
취급자 인

(舊式第7號)

※ 전수는 완납전수를 기재 할것

收入報告書	계 호	금 위정	수 입 내 역	본 보 수 거 수 수 료		계	상기 196 년 월 일 의 영문 위와같이 수 입되었기 보고함 상기 196 년 월 일 구 동수업금융남 구장장 귀하
	년도			기 분			
	일반회계			전 수 금 액			

納付書	계 호	동장남	수 입 내 역	본 보 수 거 수 수 료		계	상기 금액 납부함 상기 196 년 월 일 구 동수업금융남
	년도			기 분			
	일반회계			전 수 금 액			

納入通知書	계 호	동장남	수 입 내 역	본 보 수 거 수 수 료		계	상기 금액 납입함 상기 196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수업 구장장 귀하
	년도			기 분			
	일반회계			전 수 금 액			

(50) 규 칙

領收證書	계 호	동 장 남	수 입 내 역	분 노 수 거 수 료	기 분 금 액	계	상기금액 영수함 서기19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고	(월일수입)
	년 도							
	일 반 회 계							

(構式第8號)

養原收込手數料徵收金拂込日計表

196

徵收分

年度	金額 納期	手 數 料		加 算 金	合 計	備 考
		件 數	金 額			
現 年 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合 計						
過 年 度						
	合 計					
拂込總額						원
拂込者	收金票					枚
	職 生 名					印

(用式第9號)

糞尿收去手數料徵收日報(旬報)

洞(區)

收納分

保	事務長	洞長

多益排出處手數料							一般家庭手數料														
年度	調整額		今日徵收		徵收累計		比率	收入未済		年度	納期	測定額		今日徵收		徵收累計		比率	收入未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現年度	1									現年度	一期										
	2											二期									
	4												合計								
	5									過年度	合計										
	6																				
	7																				
	8																				
	9																				
	10																				
	11																				
	12																				
	合計																				
過年度										合計											
總計										總計											

0678

51

(52) 子 冊

(舊式第10號)

收入集計表

年	月	日	摘	要	件	數	金	額	備	考

(舊式第11号1)

一般家庭收去手数料滞納明細書(滞納簿)

196		年度		期分							區	洞							
滞	帳	納	付	者	調	定	額	加	算	額	合	計	收	納	收	納	備	考	
番	號	住	所	姓	名								年	月	日	印			

구분	계	진기	본고	주 소	소 재	성 명	명 관	수 명	일	독	촉	장	사	유
송 달	올물투기수표	권		로 동	가	관	관	198						
		실												
중	가산금	원		가	번	지	호		시					
		백												
	기본	실	원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1日

◎서울特別市規則第693號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定員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別定職計4人” 다음에 二級甲類欄 “地方技正1”과 “計1人”을 新設한다.

3級甲類欄 “地方行政書記9”를 “地方行政書記官 10”으로 하고 그앞에 “地方財經書記官1”을 新設하고 “地方保健技正1”을 “地方保健研究官1”로 “地方土木技正1”을 “地方土木技正4”로 하고 “計 20人”을 “計 25人”으로 한다.

3級乙類欄 “地方藥務技佐1”을 “地方藥務技佐9”로 “地方保健技佐7”을 “地方保健技佐3”으로 “地方保健技佐9” 다음에 “地方保健研究官補5”를 新設하고 “地方土木技佐 36”을 “地方土木技佐 40”으로 하고 “計 339人”을 “計 343人”으로 한다.

4級甲類欄 “地方機械技士 17”을 “地方機械技士21”로 “地方保健技士54”를 “地方保健技士49”로 “地方看護技士15” 다음에 “地方保健研究士5”를 新設하고 “地方土木技士77”을 “地方土木技士80”으로 “計 997人”을 “計1004人”으로 한다.

4級乙類欄 “地方行政主事補 512”를 “地方行政主事補 514”로 “地方機械技

士補19"을 "地方機械技士補22"로 "地方化工技士補4"을 "地方化工技士補5"로 "地方保健技士補35"을 "地方保健技士補29"로 "地方看護技士補30" 다음에 地方保健研究士補6"을 新設하고 "地方土木技士補103"을 "地方土木技士補 114"로 "計 936人"을 "計 953人"으로 한다.

5級甲類欄 "地方財經書記 78"을 "地方財經書記 77"로 "地方行政書記1137"을 "地方行政書記 1140"으로 "地方機械技員 27"을 "地方機械技員 28"로 "地方化工技員 5"을 "地方化工技員 6"으로 "地方保健技員 43"을 "地方保健技員 38"로 "地方看護技員 72" 다음에 "地方保健研究員 5"을 新設하고 "地方土木技員 115"를 "地方土木技員 120"으로 "計 1736人"을 "計 1745人"으로 한다.

5級乙類欄 "地方財經書記補 98"을 "地方財經書記補 97"로 "地方保健技員補 52"를 "地方保健技員補 43"으로 "地方看護技員補 160" 다음에 "地方保健研究員補 9"를 新設하고 "地方土木技員補 150"을 "地方土木技員補 168"로 "計 2497人"을 "計 2514人"으로 한다.

合計欄 "一般職公務員計 6533"을 "一般職公務員計 6593"으로 "技能職公務員計 711"을 "技能職公務員計 688"로 "雇員計 1296"을 "雇員計 1319"로 하고 "合計 8544"를 "合計 8904"로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西曆1968年 1月10日부터 適用한다.

서울特別市 地下道管理規則中 改正規則을 아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圭 三

1968年 1月31日

㉔ 서울特別市規則第694號

서울特別市地下道管理規則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 地下道管理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插入한다.

④市長은 特別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區에는 管理廳의 人員을 依하여 二類에 依하여 地下道를 維持管理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울特別市 金 玄 玉

1968年 1月31日

◎서울特別市規則第695號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項中 “및 實費患者”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 및 第3項을 削除한다.

第6條第1號 “타”를 다음과 같이 插入하고 同條第2號를 削除한다.

타. 病院長이 特別한 事태가 있다고 認定될 때 第10條(診療區分) ① 手術 區分의 種目は 다음과 같다.

1. 一般外科

手術區分	種 目
大 手 術	肺葉, 肝葉, 膽道手術, 胃手術, 各種惡性腫瘍手術, 急性腹膜炎, 甲狀腺, 胃手術脫腸
中 手 術	膿瘍, 肝囊嚢, 虫塚突起炎, 橫膈膜下腹膿瘍, 皮膚移植脫肛虫垂炎, 急性腹膜炎, 小腫瘍摘出手術
小 手 術	小腫瘍, 膿把手術

2. 胸科外科

手術區分	種 目
大 手 術	開心術(心肺機使用) 肺全別出術, 肋膜外胸切除術, 肺切除術, 剝皮術, 食道成形術, 心囊切除術, 從隔腫除去術, 大動脈成形術, 血管移植術
中 手 術	胸廓成形術, 肺部分切除術, 末梢血管成形術, 動脈吻合術, 增幅辨別開術
小 手 術	開胸術, 胸管插入法, 心臟導子法, 肋骨切除術

3. 神經外科

手術區分	種	目
大手術	開顱術, 腦腫瘍手術, 癱瘓手術, 腦血管手術, 頸蓋腔內血腫, 精神外科手術, 頸蓋骨整形手術等, 定位外科手術, 次老舍氏病不隨意運動視聽障礙術等, 全權方切除術, 脊髓膿瘍, 脊髓損傷繼向被脫出疾等, 脊髓膿瘍手術外科手術, 腰椎交感神經節摘出術, 先天的畸形整形術, 三叉神經痛手術等, 尿道穿孔術, 前庭葉截術部分的椎方切除術, 腰椎交感神經手術, 脊髓手術, 末梢神經手術等	
中手術	腦室穿刺術, 頭後血管術, 頭蓋骨腫瘍, 頭蓋骨骨髓炎, 頭蓋穿孔術, 腦靜脈網膜影等, 頸上持頸血管操影術, 頭部硬露出術, 頭皮損傷, 丘疹, 腫瘍, 三叉神經穿刺術, 顏面神經專手術	

4. 整形外科

手術區分	種	目
大手術	脊椎, 股關節, 肩甲關節等, 脊椎軟開術, 肩甲關節, 膝關節, 肘關節, 大腿, 下腿, 上臂, 前臂, 手足, 骨折, 骨髓, 骨髓炎, 四肢切斷, 大腿, 下腿, 上臂, 前臂, 手足	
中手術	骨折, 骨髓骨髓炎, 四肢切斷, 大腿, 下腿, 上臂, 前臂, 手足	
小手術	四肢	

5. 產婦人科

手術區分	種	目
大手術	子宮底部專手術, 陰道專手術, 外陰部專手術, 子宮全取出術, 子宮體部專(但上皮痛等), 帝王切開兼子宮全取出術, 腹式及腔式子宮剝出術, 二重子宮兩側取出術, 子宮剝出術, 與式子宮位置矯正術, 帝王切開術, 附屬器切斷(卵巢摘除)子宮外妊娠手術, 卵管整形手術	

中 手 術	腔式子宮位矯正術, 單純陰切除, 腔開後壁整形術, 陳舊性會陰整形術, 卵管無形術, 腹式及腔式卵管結紮異常動脈
小 手 術	試驗的閉腹 Bortholin 腺腺塊切開子宮頸燒灼術, 閉鎖性處女陰切開術, 人工流產術
外 未 手 術	攝把手術 電氣燒灼術 (子宮頸部) 卵管通氣檢查, 陰囊大鏡檢查, 子宮內膜穿刺術

6. 皮 膚 科

手術區分	種 目
中 手 術	腋臭症, 皮形手術
小 手 術	小手術

7. 泌尿器科

手術區分	種 目
大 手 術	腎剝出術, 腎部分剝出術, 副腎手術, 尿管腸吻合術, 尿管皮膚移植術, 尿管磁石術, 膀胱剝出術, 前位腺剝出術, 精囊手術, 陰囊瘻根治術, 睪丸垂根治術, 腎截石術, 腎孟截石術, 腎近管成形術, 尿管膀胱移植術, 尿道成形術, 經尿道, 前立腺切除術, 腎剝出術, 尿管腸吻合術, 尿管皮膚移植術, 尿管截石術, 膀胱各種手術, 前立腺剝出術, 睪丸剝出術, 精管副睪丸吻合術
中 手 術	除頸切除術, 腎截石術, 腎孟截石術, 腎囊造設術, 部分的膀胱切除術, 副睪丸剝出術, 經尿道各種手術, 尿道成形術, 腎孟截石術, 腎囊造設術, 尿管截石術, 尿管皮色移植術, 膀胱造設術, 膀胱截石術, 膀胱異物除去術, 部分的膀胱切除術, 前立腺手術, 陰囊水腫手術, 尿道成形術, 副睪丸剝出術, 精管切除術, 精管吻合術, 尿道各種手術, 經尿道的電氣燒灼術, 尿道截石術,

小手術 精管切除術, 包莖手術, 尿道截石術, 電氣燒口術, 外尿道口手術

8. 眼 科

手術區分	種 類	目 的
大手術	網膜剝離, 角膜移植術, 網膜剝離, 白內障, 眼內內容物取出術, 眼窩腫瘍摘出術, 淚囊鼻腔吻合術, 斜視	
中手術	白內障, 斜視, 淚囊鼻腔吻合術, 斜視, 眼球內異物, 眼瞼, 下垂, 眼瞼外反結構異狀整形術, 淚囊摘出術	
小手術	眼瞼下垂, 翼狀片, 眼球摘出術, 眼球內容物取出術, 虹彩摘出術, 虹彩切除術.	
外來手術	翼狀片, 眼瞼內反點照術, 散粒腫摘除術.	

9. 耳鼻咽喉科

手術區分	種 類	目 的
大手術	喉嚨手術, 鼓膜成形術, 內囊手術, 腦膜切開術, 內耳開 室術, 中耳根治術, 骨可動術, 上顎全摘出術, 副鼻腔及口腔內炎 性腫瘍摘出術, 鼻成形手術, 喉頭全摘出術, 頸部切除術, 全喉 乳癌突起開胃全, 口蓋裂整疝, 上顎骨全摘出術, 鼻副竇摘 出, 鼻中隔有室切除術.	
中手術	扁桃體切除術, 食管切開術, 頸口頸部手術, 鼻骨修整術, 內視 鏡術, 鼻唇結合術, 食道粘管異物, 摘出術, 鼻副竇摘出術, 喉嚨 鼻口介切除術, 아데노이드切除術, 鼻痔摘出術, 內視鏡檢查, 鼻咽口腔組織切除檢查	
小手術		

② 麻醉科의 種目別 收價는 다음과 같다.

種 目	價 格
傳導麻醉 및 神經節遮斷術	
1. 上膊神經叢傳導麻醉	원 2,000

(6 0) 훈 령

2. 尾部麻酔	800~2,000
3. 神經節麻酔	800~2,000
脈管麻酔	800~2,000
直腸麻酔	
1. 昇腸直腸麻酔	800~1,500
2. 肛入麻酔(基礎麻酔)	700
靜脈麻酔	
吸入麻酔	
1. 1時間 以內 吸入麻酔維持	2,000
1時間 以上 30分을 超過할때마다	500
2. 1時間以內 20分 麻酔維持	1,000~2,000
1時間以上 30分마다 適當 기관사입 呼吸의 追	500~700
加料金	700
3. 呼吸器使用量 1回	500
酸素呼吸料金	
(2,000 POUND)瓶	800

第11條 (實費限度額) 齒科手術에 所要되는 黃金屬의 實費는 다음 範圍內에서 徵收한다.

1. 合金冠 1齒當(手術料包含) 600원~800원
2. 總義齒 (") 10,000~15,000원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廳令第247號

各 區 廳 長

서울特別市區의 綜合巡察 制運營規程을 다음과 같이 廢止한다.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968年 1月 22日

(6 2) 사 명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차량과 이	윤	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김	태 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박	도 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조	광 욱
복직을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암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조무수	강 인 만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구로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조무수	이 응 구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사	이	원 식
농촌지도관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에 보함			
◎1968년1월4일	경남진양군	지방행정주사	정 수 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 월 1,200원을 급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1968년1월6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토목과 지방토목기원보	김 주 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정	주 길 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과	오 성 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김 주 한	
◎1968년1월7일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토목과 근무를 명함			
		오 병 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1968년1월8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 기 덕	
국립서울생사점사소 전출을 명함			
◎1968년1월9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감사관보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창 딘	
목적을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박 례 상	
중구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서기	김 도 형	

(6 4) 사 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전기사보	박 회 수
녹지과 근무를 명함	양묘장 지방임업기사보	양 상 욱
녹지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임업기원	심 만 택
녹지과 근무를 명함	사방관리소 지방임업기원보	용 환 준
◎1968년1월10일		
상공부 진출을 명함	상무과 기계기사	이 준 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김 홍 만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세 영
부산시 진출을 명함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오 만 근
인천시 진출을 명함		
◎1968년1월15일		
보건사회부 진출을 명함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정 성 욱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이 금 자
서부병원 근무를 명함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정 재 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이	의	숙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김	영	순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1968년1월20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권	유	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이	준	재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 대구시 전출을 명함	이	재	순
동대문구 지방사서서기			
경상북도 대구시 전출을 명함	이	재	순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최	정	교
부산시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박	인	식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호봉을 급함			
수도국업무과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김	성	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66) 사 명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강	사	현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김	영	두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선과 조건부지방건축기원보	황	기	중
지방건축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건설국 영선과 근무를 명함			
◎1968년1월22일			
기획과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김	영	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김	용	규
조건부 지방보건기원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1968년1월23일			
종로구보건소 조건부지방보건기원보	신	경	대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조건부지방보건기원보	양	명	생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조건부지방보건기원보 이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1968년1월24일	양지회관 지방행정주사보 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신 별 헌	운 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인천구 관리과 근무를 명함 ◎1968년 1월 27일	위생시험소 조건부지방보건기사보 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68년 1월 31일	고 성 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68년 1월 15일	공보실 사진사 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68년 1월 15일	강 동 조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호

1968년도 서울특별시 새입세출역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68년1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강	원	문
일 반 회 계		12,996,055,300원		
특 별 회 계		11,243,312,200원		
시민회관비특별회계		40,073,700원		
공익전담포비특별회계		26,930,300원		

주택비특별회계	80,384,800원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3,481,249,200원
택지조성비특별회계	384,830,200원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193,437,700원
재해구호사업비특별회계	8,418,200원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703,312,700원
유료도로비특별회계	40,293,200원
한강개발비특별회계	2,064,160,100원
운수사업비특별회계	1,403,261,000원
수도비특별회계	2,816,961,200원
총 계	24,239,367,400원

◎서울특별시고시제2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서울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를 도시계획 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합니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총람에 공한 다.

1968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조서

위	치	면	적	집행자주소	성	명	비	고
서울시	영등포구	68,133		신내동로구	전	태	기	
화곡동	641의 54			신문로 1가				
필지				58의 12				

◎서울특별시고시제3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자 지정

서울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를 도시계획 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합니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에 공 합니다.

(70) 고 시

"	"	중사배합	"	2기	16	3	7	10	"
"	"	대리배합	대추		14	3	7	10	"
"	"	대리1호	용						"
"	"	산탄계	산탄		2.5	7	11		"
"	"	"	60%	용15					"
"	"	백사료	"						"
"	"	"	산탄		17	3	7	11	"
"	"	"	75%						"
"	"	양돈배	"	양돈용	14	3	13	13	"
"	"	합사료	"						"
"	"	낙농사	"	낙농용	14	3	13	11	"
"	"	료	"						"

◎서울특별시고시제6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자 지정

서울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시 계획 범자를 도의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968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 조서

위	치	면	적	집행자주소	성	명	비고
서울시	성북구	쌍	23,2(1)	시내성북구안	최	달근	
문동	90의5번			암동1번지			

◎서울특별시고시제7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합니다.

1. 해제사유

농산조 1152.2-5085(65.12.31) 호및 3-가항및 서산록 1152.2-6197(66.8.26) 호 1-가. 나항에 의거 도시계획상 타용도로의 이용이 확정되었으며 지정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합니다.

2. 해제지

별지참조

1968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砂防地指定解除地調査

소 계 지			지목지	면적	정면적	적면적	잔면적	비율	비율
시	구	동							
서울	종로	10필		77,122	77,122	77,122	0	0	
		동대문	16		836,925	836,925	329,513	39.4	39.4
		성동	43		298,109	298,109	298,109	0	0
		성북	66		856,082	856,082	432,015	50.5	50.5
		서대문	15		1049,129	1049,129	146,010	13.9	13.9
		영등포	2		76,700	76,700	2,0100	2.6	2.6
		합계		152		1,689,006	1,689,006	1303,009	77.2
서울	동대문	경농 41~1	임야	16,425	16,425	16,425	0	0	1951
		창신 3~8	"	41,200	41,200	41,200	0	0	1958
		" 3~12	"	12,800	12,800	12,800	0	0	1951
		" 6~1	"	05,700	05,700	05,700	0	0	1951
		" 6~2	"	15,000	15,000	15,000	0	0	
		송인 1	"	09,500	09,500	09,500	0	0	1951
		" 2	"	24,100	24,100	04,916	19,114	79.3	1951
		" 4~4	"	03,800	03,800	03,800	0	0	
		" 5~4	"	481,000	18,100	11,717	36,313	20.1	1958
		신설 14~8	"	13,100	13,100	00,125	12,975	99.1	
		이문 6	"	95,000	95,000	72,629	22,371	23.6	1951
		신내 2	"	404,900	404,900	93,960	311,000	76.8	1951
		" 136	"	58,100	58,100	02,700	55,400	95.4	1951
		" 147	"	66,100	26,100	00,400	25,700	98.5	1951
서울	동대문	중화 9	"	38,000	38,000	14,400	23,600	62.1	1937
		상봉 10	"	24,100	24,100	24,100	0	0	1952
서울	성동	16필		836,925	836,925	329,513	39.4	39.4	
		신당 24~119	임야	45,300	45,300	45,300	0	0	1951
		" 24~120	"	141,009	141,009	141,009	0	0	

(7 2) 고 시

서울성	동	신당	24~	임야	1,300	11,300	01,300	0	1954	
		"	121	"						
		"	34~37	"		2,600	32,600	02,600	0	1955
		"	36~60	"		1,000	01,000	01,000	0	1954
		"	36~61	"		0,100	00,100	00,100	0	"
		"	36~63	"		0,700	00,700	00,700	0	"
		"	36~64	"		0,700	00,700	00,700	0	"
		"	36~65	"		1,200	01,200	01,200	0	"
		"	36~67	"		0,900	00,900	00,900	0	"
		"	36~68	"		0,800	00,800	00,800	0	"
서울성	동	신당	36~69	"	1,100	01,100	01,100	0	"	
		"	36~71	"	0,700	00,700	00,700	0	"	
		"	36~72	"	1,200	01,200	01,200	0	"	
		"	36~74	"	0,800	00,800	00,800	0	"	
		"	36~75	"	1,300	01,300	01,300	0	"	
		"	36~77	"	0,800	00,800	00,800	0	"	
		"	36~79	"	1,000	01,000	01,000	0	"	
		"	36~80	"	0,600	00,600	00,600	0	"	
		"	36~81	"	0,700	00,700	00,700	0	"	
		"	36~82	"	1,200	01,200	01,200	0	"	
		"	36~84	"	1,200	01,200	01,200	0	"	
		"	36~85	"	0,700	00,700	00,700	0	"	
		"	36~87	"	1,300	01,300	01,300	0	"	
		"	36~90	"	0,300	00,300	00,300	0	"	
		"	36~91	"	0,600	00,600	00,600	0	"	
		"	36~92	"	0,800	00,800	00,800	0	"	
		"	36~93	"	0,700	00,700	00,700	0	"	
		"	36~95	"	0,600	00,600	00,600	0	"	
"	36~96	"	0,900	00,900	00,900	0	"			
"	36~97	"	1,400	01,400	01,400	0	"			
"	36~98	"	0,300	00,300	00,300	0	"			

서울성	동신당	36~99	임야	02,400	02,400	02,400	0	1854	
	"	36~100	"	02,500	02,500	02,500	0	"	
	"	37~2	"	00,400	0,0400	00,400	0	"	
	"	37~3	"	03,300	03,300	03,300	0	"	
	"	37~13	"	02,400	02,400	02,400	0	"	
	"	37~14	"	17,300	17,300	17,300	0	"	
	"	37~19	"	09,400	09,400	09,400	0	"	
	"	37~20	"	00,400	00,400	00,400	0	"	
	"	37~22	"	01,200	01,200	01,200	0	"	
	"	37~33	"	01,400	01,400	01,400	0	"	
	"	37~36	"	03,600	03,600	03,600	0	"	
	계		43권		298,109	298,109	298,109	0	
	서울성	복석근	2	임야	44,900	44,900	01,000	43,900	1854
둔당		48~27	"	255,400	255,400	23,126	232,274	1854	
성북		2~1	"	128,200	128,200	01,512	126,688	1854	
"		3~1	"	00,700	00,700	00,210	00,490	1858	
"		7~1	"	87,000	87,000	00,105	86,895	1854	
"		9~1	"	01,700	01,700	00,420	01,280	"	
경동		14~1	"	54,300	54,300	00,115	54,185	1858	
"		15	"	05,000	05,000	01,200	03,800	1861	
"		16	"	173,000	173,000	05,036	167,964	1853	
"		17	"	102,000	102,000	40,809	61,191	1754	
"		24	"	02,400	02,400	02,400	0	1854	
"		40	"	16,900	16,900	16,900	0	"	
"		41	임야	05,300	05,300	03,519	01,781	1853	
"		47	"	13,100	13,100	03,713	09,387	1811	
"		48	"	01,400	01,400	01,400	0	1851	
"	49	"	01,500	01,500	01,500	0	1851		
"	51	"	04,700	04,700	04,700	0	"		

(74) 고 시

서울시	북경농	52	인야	02,900	02,900	02,900	0	1955	62~1
	"	53	"	01,700	01,700	01,700	0	"	의 3필
	"	58	"	01,400	01,400	01,400	0	"	"
	"	65	"	03,000	03,000	03,000	0	"	65~1
	"	66	"	05,100	05,100	05,100	0	"	의 7필
	"	72~1	"	14,314	14,314	14,314	0	1956	72~3
	"	86	"	02,400	02,400	04,900	47,500	1957	의 11
	"	87	"	1530,604	1530,604	30,217	1500,317	"	필 3
	미다	16	"	03,900	03,900	01,400	02,500	1934	의 90
	"	20	"	09,500	09,500	09,500	0	1956	필
	"	24~1	"	23,100	23,100	01,628	21,402	1956	"
	"	25	"	198,400	198,400	36,014	162,316	"	"
	"	34~1	"	69,000	69,000	04,911	64,019	"	"
	"	28	"	09,000	09,000	00,520	08,410	1934	28~1
	"	29~1	"	11,300	11,300	00,227	11,003	"	의 3필
	"	31	"	19,400	19,400	05,424	13,906	"	31~
	"	33	"	14,820	14,820	00,120	14,700	"	20의
	"	35	"	201,900	201,900	13,319	188,511	"	2필
	"	63	"	03,300	03,300	01,503	01,727	1955	"
	"	63~4	"	00,317	00,317	00,317	0	"	"
	"	66	"	13,300	13,300	08,566	04,724	"	"
	"	69	"	290,214	290,214	28,823	261,321	1956	69~4
	"	75	"	397,700	397,700	02,918	394,712	"	의 53
	"	100~1	"	03,400	03,400	03,400	0	1959	필
	"	108	"	386,117	386,117	63,815	382,302	"	75~2
	"	111	"	403,600	403,600	00,511	403,019	1959	의 3필
	수유	68	"	26,200	26,200	00,023	26,107	1934	111~
	"	73	"	89,900	89,900	00,800	89,100	"	1의 1
	"	89	"	09,400	09,400	05,527	03,803	"	필
	"	111~1	"	21,200	21,200	00,515	20,615	"	89~1
									의 14

	수유	113	임야	08,200	08,200	07,414	00.716	1934	10~11월
	"	132	"	08,700	08,700	05,622	03.008	"	외7월 132-1
	"	133	"	13,000	13,000	13,000	0	1935	외3월
	"	138	"	24,100	24,100	00,411	23.619	1934	138~15-1
	"	146	"	06,400	06,400	02,815	03.515	"	외14~15-1
	"	163~2	"	01,000	01,000	01,000	0	"	외16-1
	"	164-1	"	40,400	40,400	01,710	38.620	"	외2-3
	"	391~1	전	03,924	03,924	03,924	0	1941	
	공덕	228	임야	239,600	239,600	09,102	230,428	1934	228~34-2
	중계	101~3	"	112,200	112,200	03,000	108,200	1940	101~104-1
	"	104	"	471,300	471,300	02,500	468,800	1940	외5-1
	향문	282	"	10,900	10,900	03,800	07,100	1940	외291~2-2
	"	291	"	26,300	26,300	26,300	0	"	외299~301-2
	"	299	"	08,200	08,200	03,529	04,601	"	외2-3
	"	301	"	04,700	04,700	01,012	03,618	"	외301-2
	"	365	"	20,000	20,000	03,822	16,108	"	외305-3
	"	324	"	153,600	153,600	14,100	139,500	1957	외324~2-2
	도봉	29~1	"	263,2,300	2632,300	24,619	2607,611	1934	외29~2-2
	"	104	"	01,800	01,800	01,800	0	1941	외11월
계		66필		8560,820	8560,820	432,015	8128,805	"	
서울 서대문	구산	26~1	임야	05,400	05,400	05,400	0	1956	
	남가	1~1	"	23,200	23,200	10,000	13,200	1957	
	갈현	39	"	04,900	04,900	04,400	00,500	1958	
	"	44~1	"	07,810	07,810	07,810	0	"	
	"	46~2	"	04,310	04,310	04,310	0	"	
서울 서대문	갈현	92~1	"	16,228	16,228	16,100	00,128	1955	
	"	92~4	"	44,508	44,508	44,508	0	"	
	불광	94~1	"	05,000	05,000	05,000	0	1958	
	"	112~24	"	02,200	02,200	02,200	0	"	
	총계	5~9	"	01,612	01,612	01,612	0	1950	

(8 0) 고 시

	총계	5~10	임야	01,612	01,612	01,612	0	1959	
	용담	7	"	793,700	793,700	14,308	779,322	1957	
	연회	118	"	128,700	128,700	18,810	109,820	1956	
	"	113~8	"	01,000	01,000	01,000	0	"	
	수색	18~1	"	08,800	08,800	08,800	0	1957	
계		15필		1049,120	1049,120	146,010	903,110		
서울	영등포	고척	30	임야	18,100	18,100	18,100	0	1935
	사당	69~2	"	58,600	58,600	02,000	56,600	1957	
계		2필		76,700	76,700	20,100	56,600		
서울	종로	로사직	1~3	임야	02,300	02,300	02,300	0	1954
서울	종로	로사리	1~7	임야	00,500	00,500	00,500	0	1954
	신교	3~1	"	00,221	00,221	00,221	0	"	
	"	3~5	"	00,015	00,015	00,015	0	"	
	"	3~6	"	01,127	01,127	01,127	0	"	
	"	3~7	"	00,101	00,101	00,101	0	"	
	"	3~8	"	01,316	01,316	01,316	0	"	
	청운	4~9	"	02,300	02,300	02,300	0	"	
	명륜	1~5	"	04,620	04,620	04,620	0	"	
	외동	3~4	"	54,412	54,412	54,412	0	"	
계		10필		77,122	77,122	77,122	0		
합계		152필		1,089,006	1,089,006	1303,009	959,5927		

◎서울특별시고시제8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고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칭	위 치	비 고
성북구 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13-109	
마포구 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253-17	

동대문구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림동165-3	전화번호	333-3333
서대문구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남동75	전화번호	333-3333

196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호

건설부고시 제 179호(62.12.8)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역-서대문로타리 도로확장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소유를 공고하며 별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도로확장공사
2. 기점및종점 서울역-서대문로타리
3. 토지의세목 별지

1968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외주로1가18번지

분할권표시지	지목	분할권표시지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소명
외주로1가 48-1	68 ²	외주로1가 48-2	橫宗 李
" 49-1	16 ²	" 49-2	李 男 教 養 院
" 50-2	1 ³	" 50-1	李 李 會 社 養 行
" 51-1	6 ³	" 51-2	李 會 社 養 行
" 63-2	13	" 63-1	張 光 熙
" 64-4	16 ³	" 64-2	鄭 恩 貞
" 64-3	0.3	" 64-1	"
" 66-2	10	" 66-1	國 時 節 法 人 元 善 學 園
" 67-2	10	" 67-1	"
" 80-113.869 ²	"	" 80-2	合併으로因하여 登記 第2號의 移 國

(8 2) 공 고

"			" 91-1	29 ⁷		國	
" 106외3	31 ⁷	111	" 106-1	14 ⁹		京 城 府	
"		대	" 106-2	17 ⁴	의주로1가106외2	崔 南 順	
" 107외1	18 ⁹	"	" 107-2	21 ⁴	의주로1가107-1	金 椿 性	
"			" 108-5	9 ³		國	
" 108-1	39 ⁹	"			의주로1가108-1	洪 性 淑	
" 108-7	1 ⁷	"	" 108-4	17 ⁴	" 109	許 康 奘	
" 109-3	25		" 109-1	48	의주로1가109	許 東 春	
" 116-2	3 ⁹		" 110-1	13 ⁷	의주로2가142	張 熙 謙	根20萬원대구시 중구원洞李錫南
" 111-2	15		" 111-11	41	" 111	李 果 珍	根63萬원서울 銀行
" 177외1	93		" 177-2	22	" 177	張 熙 台	
" 175-1	15	"	" 175-2	5	중구동자17-16	黃 仁 德	
" 174-1	35	"	" 174-2	1	日人	大 園 正 明	
" 153-2	11.1	"	" 153-1	65 ⁹		國	

◎서울특별시공고제2호

건설부고시제177호(62.12.8)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서울역광장 및 서울역-남대문로 도로확가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세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도로확가공사
3. 기점 및 종결 서울역광장, 서울역-남대문로
3. 토지 및 건물세목(별첨토지 및 건물 표시와 같음)

1968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私 有

1

순	위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주 주	소 성	명 비	고
1	東子洞	14-38	4	14-38	李 漢 宗		
2	"	14-80	10.7	15	재단법인조선신학원	유지재단	

3	"	14-89	23 ²	14-89	吳 明 川
4	"	41-99	13 ²	14-99	全 興 棟
5	"	14-109	22 ¹	14-17	金 禮 順
6	"	14-108	22 ²	"	"
7	"	14-107	22	龍山城西界路99-15	李 恩 鏡
8	"	14-122	18	14-122	金 潤 熙
9	"	14-81	66 ²	14-81	石 鏡 順
10	"	14-128	129 ²	龍山274-1	東和洋行 Dong & Co.
11	"	14-80	101 ¹	15	東和洋行 Dong & Co.
12	"	14-55	72	龍山274-113	沈 吳 洋
13	"	43-56	120 ²	龍山274-75	韓 國 電 力
14	"	43-55	15 ¹	43-55	金 景 寅
15	"	43-54	43 ²	東和洋行99-1	李 性 柱
16	"	43-53	70 ²	43-53	東 邦 洋 行 Dong Bang Co.
17	"	43-52	69 ²	43-52	尹 德 錄
18	"	43-129	30	西界路121 北阿美路1-73	金 德 光
19	"	43-51	18	41-322	張 錫 祿
20	"	43-85	12	43-85	文 相 允
21	"	12-13	85	東和洋行保險Co.	
22	"	12-59	37 ²	天龍路東西路111	李 景 錫
23	"	12-39	17	萬里322	李 成 大
24	東子洞	12-51	6	東子洞119	李 德 福
25	統洞 1次	91-18	15 ¹	12-11	李 德 福
26	"	91-19	11 ²	"	"
27	"	91-20	5 ²	東子洞4里10	李 德 福
28	"	91-31	35	萬里路131-2 首門洞7-3	金 德 榮
29	"	91-22	70 ¹	東子洞12-37	鄭 金 一
30	南大門路 52次	1-3	215 ¹	1	東和洋行
31	"	3-8	132 ²	龍山274-111-1	東和洋行
32	"	74-9	4	74	李 德 福

(8 4) 공 고

33	"	74-8	1 ¹	74	趙 乙 順
34	"	74-7	1 ¹	74	金 大 順
35	"	74-6	1 ¹	74	梁 龜 默
36	"	74-3	13 ²	74	趙 乙 順
37	"	74-2	7 ²	74	金 大 順
38	"	73-1	4 ¹	"	"
39	"	75-1	43	"	金 圭 煥
40	"	74-1	127	세단법인東亞交通社	
41	"	115-10	196	학교법인연세대학교	
42	"	115-11	130	"	
43	"	115-8	91	"	金 圭 煥
44	"	115-3	3 ⁵	학교법인연세대학교	
45	"	73-3	4	71	趙 乙 順

土 地 調 査

순 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東子洞	14-51	16 ² 평		國	
2	"	14-140	10		"	
3	"	14-56	2 ²		"	
4	"	14-68	51		"	
5	"	14-67	50		"	
6	"	14-83	20		"	
7	"	14-79	11		"	
8	"	14-17	15		"	
9	"	14-18	54 ¹		"	
10	"	14-63	30		"	
11	"	14-62	50		"	
12	"	14-11	10 ²		"	

13	"	14-53	42 ¹	國
14	"	14-61	50	"
15	"	14-60	50	"
16	"	14-10	21	"
17	"	14-59	20	"
18	"	14-58	70 ³	"
19	"	14-57	79 ³	"
20	"	14-37	40 ³	"
21	"	14-35	13 ³	"
22	"	14-52	271 ¹	"
23	"	43-75	48	"
24	"	43-74	32	"
25	"	43-73	31	"
26	"	43-110	16	"
27	"	43-56	32	"
28	"	43-49	48	"
29	"	43-68	42	"
30	"	43-48	6	"
31	"	43-67	69	"
32	"	43-66	47 ⁶	"
33	"	43-47	46	"
34	"	43-46	16	"
35	"	12-33	120	"
36	"	12-32	209	"
37	"	12-31	209 ¹	"
38	"	12-30	130	"
39	"	12-29	99 ⁶	"
40	"	12-28	14 ⁷	"
41	"	12-54	18	"
42	"	12-55	84	"

(8 6) 공 고

43	"	12-56	1:8		國	
44	"	12-1	2, 1:0		"	
45	"	12-45	3 ²		"	
46	"	12-38	2		"	
47	"	12-34	1 ²		"	
48	"	12-43	4		"	
49	"	12-37	47 ⁴		"	
50	"	12-44	5		"	
51	"	14-48	12 ²		귀속	
52	"	14-47	14 ⁴		"	
53	"	12-53	2 ⁶		서울시	
54	"	12-52	10 ²		"	
55	"	12-48	11 ⁸		"	
56	"	12-12	6 ²		"	
57	"	12-46	50		國	
58	東大門 5가	74-5	14		"	
59	"	74-4	14 ²		"	
60	"	73-2	1 4 ⁵		"	
61	"	1-4	10		"	
62	"	73-4	0 ¹		귀속	
63	蓮來洞 1가	104-2	13		國	
64	桃洞 1가	3-84	1 2 ³		서울시	道路

건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지번	구	조	평 수			계	주 소	성 명	
					1층	2층	3층 이하				
1	東子洞	12-33	천근	공	105	127		3	230	홍석등山15	귀속
2	"	12-30	"	"	115	298		24	437	조선운상	
3	"	12-1	연와	조 3층	123	172		20	315	"	

	"	12-31	연과조	67	119			186	홍동426	洪淳益45인
	"	"	" 개와즙	32				32	12-31	金 富 益
4	"	"	"	10	10			20		李 自 仁
	"	"	"		51			51	전봉동111	任 天 宰
	"	"	목조도단즙	21				21	12-31	金 天 煥
	"	"	"	21				21		鄭 羅 燾
5	"	12-50	"	21	17			39		李 永 鍊
6	"	12-49	"	21	21			43	萬里洞1가	許 燮 大
7	南大門路 52가	74-1	목조합식즙	27				27	21 남선동283	安 塚 勳
"	"	"	목조와기즙	15				15		金 國 炳
8	"	3-1	연와목조부도 사이트즙	107	30			137		한문상업은행 31-83
	"	"	물치장	2				2		"
9	"	1-1	연와조3층	108	216			72	396	한양대학교 1111
	"	"	목조도단즙 가	3				3		"
	"	"	연와조아연즙	42	40			83		"
10	南大門5 가 蓮來洞1 가	1-2 105 186 107	철근conc 도단즙	143	143	332	150	527		國 공립보통학교부
11	桃洞1가	91-18	세면벽돌개와 즙	19	19			40		"
	"	"	부속시멘벽돌 조와즙	20				20	11-88	李 德 壽
	"	"	"							"
12	"	91-19	목조와즙	15	15			31		姜 德 一
13	桃洞1가	91-22	연과조	30	30			61		金 自 益
	"	"	세면부력와즙	7				7		許 天 煥
14	南大門5 가	73-1 74-2	연와조도단즙	21				21	연와조도단 45	任 天 煥
	"	"	"	69				69	연와조도단 자문서100	任 天 煥
	"	"	연와조	16	16			32		金 天 益
	"	"	"	21	21			43	71	任 天 煥
	"	"	"	12	12			24	연와조도단 130-19	任 天 煥
	"	"	"	13	13			26	사리동2가 115	金 雲 澤
	"	"	"	6	6			12		李 德 壽

◎서울특별시공고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실시공고

창동, 연희, 역촌, 화양, 마우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변경 실시 계획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음을 공고 합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관계 서류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8호

청산수입 고지서 공시 송달

주소또는거소 서울특별시 시대문구 북아현동 6-36호 김상철외 79명납입 고지서 67년도 수시

1. 납입기한 68.1.30

2. 납입장소 상업은행 본점및 시금고나 또는 당시도시계획국 서무과
상기 청산수입고지서를 67.12.1자67.12.31납기로 동기우상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납입기일을 68.1.30로 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196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입 련 번호	고지 서 번호	물 건 지 번호	납 입 액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성 명
1	1	창천65-65	152,311	북아현동6-36	金 相 高
2	2	" 65-12	123,548	서교8-6	崔 聖 五
3	5	" 102-1	166,372	동교65-1	張 載 謙
4	11	동교155-8	417,426	사적농257	尹 一 炳
5	14	동교168-5	122,553	동교7-39	李 榮 培
6	17	창천111-4	7,112	시당동217-21	俞 鳳 濟
7	18	" 111-9	10,926	광천62	徐 永 春

8	21	창천 112-22	186,731	척선동91-1	夏性基
9	24	" 112-9	36,918	창천 112-9	洪明淑
10	26	동교185-16	286,237	대림로2가30-4	姜渭實
11	27	" 186-29	82,155	서교8-10	崔慶榮
12	32	" 184-22	157,853	합경264-60	金敬英
13	39	" 183-9	374,360	성북동1가104	安承鳳
14	40	창천113-6	178,496	창천54-1	朴濟恒
15	41	" 113-7	111,685	" 160-16	金學石
16	46	동교138-14	290,441	동학동11-186	李昌烈
17	47	동교138-3	121,304	동교28-20	李俊奎
18	48	" 138-15	170,018	" 138-15	吳玉煥
19	50	" 180-12	98,141	" 32-15	金基正
20	52	" 180-8	20,779	" 32-6	金永
21	57	" 178-3	32,742	하일동90-12	丁仁淑
22	58	동교178-4	121,840	북악동3-110	朴正
23	63	" 179-9	56,073	신당동352-7	朴正
24	64	" 179-20	398,198	동진로1가187	朴正
25	65	" 179-7	67,517	금호동1110	朴正
26	75	" 167-19	243,049	서교247-112	朴正
27	81	서교326-18	112,078	동교65	朴正
28	86	" 340-18	260,840	서교55-2	宋政成
29	88	" 338-2	1,605	서교28-6	李俊哲
30	89	" 86-20	45,759	" 358-2	朴正
31	90	" 358-3	27,712	" 358-3	朴正
32	108	" 367-9	45,090	동학290-2	李鍾燮
33	111	" 358-20	265,134	서교68-8	朴正
34	115	" 360-8	140,495	" 360-8	朴正
35	126	합경416-18	37,939	노고산동56-20	朴正
36	131	" 361-2	123,686	합경264,105	朴正
37	132	" 361-3	62,904	" 27-4	朴正

(9 0) 공 교

38	135	합경 379-12	71,776	합경 379-12	양 경 희
39	136	" 378-12	24,681	아현 등 379-23	孫 主 植
40	142	" 382-2	18,617	관철 등 178-1	趙 潘 玉
41	146	" 384-1	115,583	합경 263	김 익 준
42	147	" 384-33	88,237	" 284-33	경 태 병
43	152	망원 400-18	12,955	창천 52-46	손 태 희
44	157	합경 359-10	35,883	합경 210-1	송 충 부
45	158	" 359-13	16,009	" 45-6	양 보 환
46	161	" 361-18	86,359	창천 33	문 권 호
47	164	" 367-6	77,382	" 367-6	이 은 량
48	167	" 309-9	70,787	당인 등 66	김 소 길
49	169	" 370-10	3,479	합경 210-3	고 의 환
50	177	" 381-35	51,568	" 172-11	최 흥 만
51	180	" 383-3	37,207	" 245-13	김 병 수
52	186	" 382-9	356,793	" 253	김 순 욱
53	190	" 387-13	55,454	" 263	박 풍 기
54	191	" 387-14	131,164	" 276	김 봉 근
55	195	" 384-20	107,411	전농 등 206-5	홍 필 선
56	199	" 385-14	95,385	합경 282	김 익 배
57	200	망원 306-21	113,875	광희 1가 182-6	박 언 선
58	204	창천 112-20	77,064	창천 2-16	김 동 환
59	205	동교 185-10	139,716	동교 46-16	민 춘 식
60	211	동교 186-38	8,992	" 47-9	윤 덕 노
61	215	" 186-10	214,244	창천 53	신 현 길
62	216	" 186-23	94,613	서교 7-43	엄 상 현
63	220	" 186-28	48,703	" 7-4	김 미 분
64	231	동교 동 188-5	141,311	서교 12-4	李 淳 正
65	232	" 188-19	129,044	" 20	박 태 섭
66	233	" 188-23	48,403	" 10-6	이 만 동
67	240	" 188-21	271,929	창천 30-15	민 경 권

68	241	동교동188-17	115.396	서교10-7	김영순
69	243	" 184-7	174.731	노량진동302-155	김영순
70	246	" 184-11	179.166	동교44-20	이희봉
71	255	" 138-33	35.545	창현100-15	김영순
72	257	" 180-26	44.673	동교32-4	김영순
73	262	" 180-30	40.015	" 32-12	서교민
74	265	" 180-32	20.833	" 32-17	유광희
75	267	" 180-33	5.487	" 32-28	김영순
76	269	" 180-34	30.598	" 32-31	김영순
77	270	" 180-18	431.943	충무동279-10	김영순
78	272	" 178-1	223.561	상인동1156	박원숙
79	274	동교179-5	154.464	동교19-4	이종실
80	284	합정379-6	51.360	합정25	김영순

◎서울특별시공고제9호

건설부고시제381호(67.5.24)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인 영등포-시흥간(50m)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로장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안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사 명 영등포-시흥간 도로공사(50m)

공고기간 1968.1.13~1.22(10일간)

(세득은 별지와 같음)

1968년 1월10일

서울특별시

도정주서

연번	분할전표지		지목	분할후표지		소유자	관비인
	지번	면적수		지번	면적수		
1	신대방동565	22,297	築	신대방동565-2	39	한국도림구신대방사	
2	" 584-6	175	"	" 584-12	11	신촌로2가139	김昌成
3	" 587	478	"	" 587-2	9		김昌成
4	" 607-4	1,146	"	" 607-7	240		김昌成

(9 2) 공 고

5	"		" " 607-8	68		
6	" 607-6	4,146	" " 607-10	2	孝子洞3	李昌熙
7	신도림동952-2	370	" 신도림동952-2	205		
8	" 952-6	952	" " 952-6	228		李建熙 金天柱
9	" 962-1	504	" " 962-1	221	三游洞35-106	外16人
10	" 952-3	124	田 " 952-3	124	조선체육	공업주 식회사
11	" 962-3	205	筵 " 962-3	205	孝子洞3	李昌熙

◎서울특별시공고제13호

1. 건설부고시 제745호(67.11.23)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경인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그합니다.

가. 공사명 경인고속도로공사

1968년 1월16일

서울특별시

토지조서

순 위	재산소재(불활전)		불활후)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재산소재지	지목지	계	재산소재지	지목지	주 소영	명	주 소영명	
1	영등포구양평동3가71	대	521	영등:구양평동3가71	306	종로구건지동111	중소기업은행		
2	영등포구양평동3가71-1	대	118	영등:구양평동3가71-1		87(미동기)			
3	영등포구양평동76	대	3,374	영등:구양평동76-2	232	남대문로2가5번지	한국전력사		
4	영등포구양평동3가72-3	대	114	영등:구양평동72-8	48	서대문구아현동293-3	채규철 신용		
5	영등포구양평동3가75	대	2183	영등:구양평동375-2	148	①종로구신문로2가1-128 ②북대체과주식회사 ③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공고제14호

1. 건설부고시 제444호(67.7.11)로 고시된 당시도시계획사업인 청진동지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경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사명 청진동 지내 도로공사

1968년 1월15일

서울특별시

도 지 도 서

순 위	분할전 재산소재지	분 할 구 분	분 할 구 분	소 유 자	관 개 인	비 고
재산소재지	지번	지번	지번	소속 당주	소속 당주	
1	종로구청진 동260	대	33	종로구청진 동200-2	8	종로구청진동 145-20 민병기
2	" 295	"	68			종로구청진동 295 김철재 현인은행
3	" 283-1	"	267	283-4	23	청진동216 우일번
4	" 266	"	55	266-2	5	중구청진동 가89-1 우진원
5	" 284	"	70	284-2	12	중구청진로 2가46 이수형보 신수회회사
6	" 255-1	"	32	종로구청진 동255-3	30	청진동255-3 김동식
7	" 218-1	"	37	218-1	37	목수우다
8	" 296	"	70	296-2	10	종로구청진동 178-4 이창복
9	" 184-1	"	80	184-4	0	성동구청진동 236-28 이광진
10	" 203-1	"	102	203-3	101	성동구청진동 25 김병희
11	" 214	"	22	214-2	9	청진동214 오의동
12	" 213	"	11	213-2	10	청진동205 이정하
13	" 294	"	19			청진동294 박우영
14	" 258	"	61	258-2	25	청진동258 박대신
15	" 293-1	"	22			
16	" 259	"	61			중구청진동13 이영승
17	종로구청진 동202	도	46		46	종로구청진동 189-11 손상희 서린동93 배상규
18	" 216	대	46	종로구청진 동216-2	22	종로구청진동 204 배순관
19	" 209	"	28	" 209-2	11	" 209 양정희

(9 4) 공 고

20	종로구청진 대 211-2	15	종로구청:1 동 211-6	11	방모천		
21	" 236 "	89	" 236-2	21	서대문구만리 동1가66-16	박남용	한일은행
22	" 217 "	34	" 217-7	29	종로구당주동 55-7	김기만	
23	" 253 "	11	" 253-2	7	용산구청파동 3가109	강해중	
24	" 238 "	45	" 238-2	22	청진동190	박영희	
25	" 215-1 "	26	" 215-3	20	청진동215	박정량	
26	" 288-2 "	46	" 288-5	0	동대문구창신 동12-2	장사홍	중소기업 은행
27	" 217-3 "	16	" 217-9	15	청진동17-3	고만순	
28	" 293-2 "	29		29	청진동293-2	차복실	
29	" 293-4 "	16			청진동293-4	박유무	
30	" 287-2 "	14	" 287-6	13	성동구중곡동 377	이세화	
31	" 293-5 "	15	" 293-9	6	창성동12-3	장사홍	
32	" 287-3 "	33	" 287-7	15	청진동287-3	이화식	
33	" 193 "	34			청진동193	이건호	
34	" 286 "	68	" 286-2	11	청진동286	윤기주	한국무진 주식회사
35	대종로구청 진동256	33	종로구청진 동256-2	14	청진동256	최영덕	
63	" 217-5 "	39	" 217-5	3	청진동217	김정순	
37	" 226 "	40	" 226-3	1	중구임경동 160	이일남	한국상업 은행
38	" 237 "	43	" 237-2	26	청진동237	이귀동	
39	" 219-2 "	9	"	9	수송동45-1	김홍수	가치분강 재경매박 송옥
40	" 229-1 "	77	" 229-4	2	수송동68-2	이종익	조흥은행
41	종로구종로 1가22	44		35	용산구청파동 1가47-5	김병귀	한국중앙 부진유식 회사
42	종로1가23	56		40	종로구1가 23	박원영	한일은행

①65,000
원 ②21萬
54萬30萬

800萬원

420萬원

65,000원

39萬원

85萬원

○서울특별시공고제15호

1. 건설부고시제177호(62.12.8)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장충로 확장공사에 저촉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요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 공 사 명 장충로 확장공사

1968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토지조서

순의	계산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	별	인	비	고
			주	소성	영구	소성	영	당금대	
1	중구장충가29-2	1	41	新堂洞1651	金鍾高				
2	" 60-1	田	363	장충1260	李建澤				
3	" 28-1	1	34	新堂洞05-1	金鍾高				
	"			新堂洞361	董貞玉				
4	" 56-1	"	28	獎忠1街56-5	董慶伊				
5	" 61-2	1	9	獎忠1街61-1	金光一				
6	" 60-2	道路	20	獎忠1街54	北野番				
7	" 61-4	1	10	" 61-1	金光一				彩票連 은 8361
8	" 57-3	"	31	大邱市三德洞104	許彩蓮			61萬5千	萬5千
9	" 57-6	"	21	1가57-6	金弼漢	商銀銀行		55萬	은 4만
10	" 57-7	"	20	" 57-6	金弼漢	"		55萬	
11	" 57-8	"	1	"	金弼漢	"		55萬	
12	" 26-9	"	170	" 26-17	林興權				
13	" 28-5	"	3	城北區教岩洞261	松野千正				
14	" 57-10	"	12	龍山區厚岩洞60-9	李起	商銀銀行		348萬	은 4만
15	" 57-0	"	97	獎忠1街57-9	朴敬禮	萬善銀行		9,65萬 10,65萬 (11)70萬	
16	" 56-4	"	88	경북경곡군외관읍외관동134-1	계단성인 계단성인 도수도인				
17	" 57-4	"	7	장충1가57-6	金弼漢			7萬	金弼漢
18	" 26-17	"	74	" 26-17	林興權				
19	" 26-15	"	107	" 26-15	朴元陽				
20	" 56-11	"	51	" 35-8	具倫秀	第一銀行		224萬	은 1萬 第一銀行
21	" 51-13	"	135	목정동29-31	姜在榮				
22	" 56-9	"	20	장충1가56-7	洪濟一				

23	26-13	84°	16-13	邊 敏 學	韓一銀行 (3) 34萬 (4) 22萬 (5) 1.04萬	근저당
24	장충1가26-16	산	123° 장충가26-16	朴 文 亨		
25	" 29-4	"	0° " 12-8	李 相 麟		야구圈
26	" 29-3	"	2° " 28	金 鳳 鶴		야구圈
27	" 28-6	"	13° " 28	金 鳳 鶴		야구圈
	" 28-7	"	9° 장충1가52-8	李 相 麟		
29	" 56-19	"	5° " 19	劉 恩 姬		
30	" 56-37	"	7° " 56-37	吳 升 清		
31	" 56-33	"	10° " 56-33	金 昌 根		
32	" 56-49	"	5° " 56-49	鮮 于 鍾 姬		
33	" 31-5	"	431° " 31-5	車 鐵 正		
34	" 56-55	"	5° " 56-55	姜 信 範		
35	" 56-54	"	5° " 56	金 明 玉		
36	" 56-50	"	5° " 56-50	趙 炳 勳		
37	" 56-51	"	5° " 56-51	金 博 淑		
38	" 56-52	"	2° " 56	羅 義 俊		
39	" 56-56	"	5° " 56	李 相 玉		62-98
40	" 62-97	"	13° "	國		未
41	" 56-53	"	5° 장충1가56-53	安 國 鎭		
	장충1가56-10	道路	132° [登記제와장충1가56-10공유부담]			
42	장충1가56-10	"	1° 장충1가56	유 은 희		
43	"	"	1° " 1327	이 임 관		
44	"	"	1° " 1327	신 수 분		
45	"	"	1° " 1327	정 형 초		
46	"	"	3° " 1327	안 중 길		
47	장충1가56-10	道路	1° 장충1가56 1327	강 세 친		

48	장충1가 56-10	1 ^부 1327	장충1가36	이 교 민
49	" "	1 ^부 1327	"	서 길 수
50	" "	1 ^부 1327	"	전 근 환
51	" "	3 ^부 1327	"	김 찬 경
52	" "	2 ^부 1327	"	홍 화 범
53	" "	3 ^부 1327	"	김 창 근
54	" "	1 ^부 1327	"	최 낙 수
55	" "	3 ^부 1327	상 두 동 22-23	장 성 운
56	" "	3 ^부 1327	장충1가56	오 승 지
57	" "	1 ^부 1327	"	류 금 순
58	" "	3 ^부 1327	"	강 덕 봉
59	" "	0 ^부 1327	"	장 오 산
60	" "	1 ^부 1327	"	최 홍 권
61	" "	1 ^부 1327	"	김 숙 진
62	" "	1 ^부 1327	"	이 남 영
63	" "	3 ^부 1327	"	이 정 자
64	" "	1 ^부 1327	상 두 동 구 육 수 동 424-2	박 장 원
65	" "	3 ^부 1327	장충1가56	배 동 제
66	" "	1 ^부 1327	"	선 우 종
67	" "	1 ^부 1327	"	조 병 윤
68	" "	1 ^부 1327	"	전 박 수
69	" "	1 ^부 1327	"	한 국 진
70	" "	1 ^부 1327	"	김 명 욱
71	" "	1 ^부 1327	"	장 신 범

(98) 공 고

72	장충1가 56-10	1327	3 ^상 장충1가56	안 국 진			
73	"	1 ^상 1327	"	최 종 설			
74	"	1 ^상 1327	"	권 경 열			
75	"	1 ^상 1327	"	김 주 경			
76	"	3 ^상 1327	"	안 봉 욱			
77	"	1 ^상 1327	"	신 정 규			
78	"	1 ^상 1327	"	최 종 선			
79	"	1 ^상 1327	"	한 충 선			
80	"	1 ^상 1327	"	이 균 상			
81	"	3 ^상 1327	"	박 용 백			
82	"	3 ^상 1327	"	주 건 성			
83	"	1 ^상 1327	"	이 우 석			
84	"	1 ^상 1327	"	유 재 선			
85	"	1 ^상 1327	"	허 증 훈			
86	"	1 ^상 1327	"	김 영 준			
87	"	2 ^상 1327	"	김 영 태			
88	"	1 ^상 1327	장충1가56-45	차 남 순			
89	"	3 ^상 1327	장충1가56	유 홍 식			
90	"	1 ^상 1327	장충1가56-46	유 경 순			
91	"	5 ^상 1327	장충1가56	노 경 섭			
92	"	1 ^상 1327	" 51-22	허 준 승			
93	"	3 ^상 1327	" 56	임 철 용			
94	"	1 ^상 1327	"	이 상 욱			
95	장충1가 56-10	9 ^상 1327	장충1가56-34	김 원 중			

97	상충1가 56-10	1327	1 ^상 상충1가56-25	성 사 동				
	"	1327	1 ^상 " 56-32	이 영 철				

구	소재지	지번	구			제	주	소	명			
			1	2	3							
1	상충동 1가	26-17	석면부독화가	32 ⁵⁸				32 ⁵⁸	상충1가26-9	대	학	당
2	"	26-13	독조화가	23 ⁵⁹				23 ⁵⁹	상충2가186	문	학	당
3	"	26-16	독조화가 독조도단	32 ⁵⁸ 1 ⁵				35 ⁵¹	상충1가26-16	학	당	당
4	"	28-1	연화조	10	10			20 ⁵	상충4-5-1	金	학	당
5	"	28-9 29-4	독조도단	26 ⁵				26 ⁵	상충1가52-8	李	相	錫
6	"	57-6 57-7 57-8	상근독크리드 독조도단	7 ⁵⁸		19 ⁵⁸		26 ⁵⁸	" 57-6	金	學	漢
7	"	57-9	석면부독도단	13 ⁵⁸				17 ⁵⁸	" 57-9	朴	新	錫
8	"	56-1	독조스리드	24				24				
9	"	56-13	상크리드연화	69	71 ⁵⁸	51 ⁵⁸	13 ⁵⁸	205 ⁵⁸	" 56-13	文	錫	錫
10	"	60-1	독조연화	32 ⁵⁸				22 ⁵⁸	" 60-1	李	建	錫
11	"	62-25 62-24 62-19	연화프링계유 독조화조도 단	35 ⁵⁸	26 ⁵⁸	6 ⁵⁸		68 ⁵⁸	" 62-19	高	錫	錫
12	"	26-15	독조화조	20 ⁵⁸				20 ⁵⁸	" 26-15	朴	錫	錫
13	"	61-1	독조화조	16 ⁵⁸				18 ⁵⁸	" 61-1			

◎서울특별시공고제19호

서교토지구획관리지구 청산금 결정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구수도는거소 용산구 후암동232 고덕수 외88명
 상기 청산금 결정액 통지서를 67.2.23 일자로 각각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함으로 도시계획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에 공고 합니다.

1968년 1월20일

서울특별시장

0700

洞名	地番	過度面積	減價面積	徵收清算金	交付清算金	住	所姓	名
東橋洞	167-15					厚岩洞232	高德	守
"	136-17	13 ⁵⁰		166,372		東橋洞65-1	張載	基
"	185-16	10 ⁶⁴		286,237		" 6-22	成金	祐
"	180-2					合井洞山2-5	徐鍾	英
"	184-22	8 ⁵⁰		157853		合井洞44-60	金敷	炳
"	155-8	17 ⁰⁰		417,426		사외동257	尹一	變
"	164-14	3	3 ⁶¹		25,055	阿候洞343	車壬	變
"	138-18					東橋洞28-11	李聖	鎮
"	168-5	5 ⁰⁰		122,553		" 7-39	李榮	培
"	155-27					新股洞103-79	吳廷	秀
"	179-20	21 ⁹²		398,198		乙支路4街187	申賜	澁
"	183-9	24 ⁰⁷		374,360		城北洞1街104	安承	鳳
"	179-25					東橋洞19-4	李鉞	慶
"	138-3	7 ³³		121,304		" 28-20	李俊	秀
"	167-19	11 ¹²		243,049		" 64	安義	均
"	156-5					大峴洞12-84	鄭潤	植
"	138-16					楊平洞1街106	金道	信
"	167-28					東橋洞65	李淳	忠
"	44-17	9 ⁹⁶		166,426		" 44-17	金泰	壽
西橋洞	330-27					漢江路3街40-459	宋漢	鎮
"	370-5	13 ⁶⁰		165,088		西橋洞166	金晶	洙
西橋洞	328-19							
"	328-20							
"	328-51							
計		27 ⁹⁷		401,776		西橋洞20-16	陳于	蘭
"	370-3					" 158	宋振	成
"	373-9							
"	373-11							

計	10 ⁰⁰	171,826	忠武路4715-6	張明煥
" 371-7			普光洞265-362	辛洪順
" 369-4	20 ⁰⁰		224,492厚岩洞163-1	廉永吉
" 373-10	3 ⁰⁰		62,986西橋洞142-8	姜山伊
" 338-2	0 ¹¹	1,605	" 28-8	尹俊升
" 405-13	0 ⁷⁰	7,603	" 110	李貴紅
" 327-1	17 ⁰⁰	263,140	桃花洞7	朴昌奉
" 358-2	3 ⁰⁰	45,759	滄川洞99-1	金義植
" 361-5	1 ⁰⁰	14,637	西橋洞98-13	李光昌
" 327-21	3 ⁰⁰	62,585	" 20	金鍾水
" 355-14				
" 355-15				
" 355-16				
計	29 ⁰⁰	361,914	西橋洞169	李完鉉
西橋洞339-11	5 ⁰⁰		" 55-2	宋蓋成
西橋洞374-4			西橋洞170-7	宋永七
羅遠洞400-16	1 ⁰⁰	5,629	合井洞263	金容浩
" 306-21				
" 306-22				
計	13 ⁰⁰	113,875	光照洞1街182-6	朴永善
羅遠洞326-7	0 ⁰⁰	1,103	合井洞117	金鍾錫
滄川洞112-7	9 ⁰⁰	152,311	北阿規洞5-36	金哲高
" 111-6			光照洞1斗178	金大英
" 111-4	0 ⁰⁰	7,112	新堂洞217-21	余氣熙
" 65-63	11 ⁰⁰	186,731	廣善洞91-9	閔正基
" 113-6	7 ⁰⁰	178,496	滄川洞51-1	朴進恒
" 111-9	0 ⁰⁰	10,926	" 69	徐大春
合井洞384-18	13 ⁰⁰	94,042	合井洞253-2	金容基
" 361-18	16 ⁰⁰	86,359	滄川洞33	文品錫
" 325-2	3 ⁰⁰	40,312	西橋洞13-9	安春德

387-13	9 ¹⁸	55,454	合并洞263	朴 豊 起
384-20	15 ⁸⁴	117,411	元曉路1가28-2	金 善 周
383-2	4 ¹²	9,308	" 1가28-2	申 淑 均
381-35	6 ⁹⁸	54,568	合并洞172-11	崔 興 萬
381-54	5 ⁵⁴	55,599		
381-51	13 ⁸¹	122,242	合并洞172-5	金 基 敏
416-28	24 ⁹⁰	335,304	264	趙 鍾 和
合并洞367-5	12 ⁹⁰	125,287	合并洞208-11	李 錫 球
377-9			山 7	南 順 熙
359-10	6 ⁹⁶	35,883	" 30-1	宋 忠 順
382-3	3 ⁹⁰	40,466	滄川洞99-23	朴 贊 麟
415-1				
西橋393-5	5 ⁹⁰	60,716	合并洞264-64	張 文 根
合并洞383-23	12 ⁹⁰	104,371	" 255-7	崔 永 巨
383-16		1 ¹⁴	18,239 " 255	崔 昌 植
378-12	2 ¹⁰	24,681	阿峴洞379-23	孫 主 植
367-6	11 ⁷⁸	77,382	合并洞208-11	李 錫 球
382-9				
382-10				
382-11	42 ⁸²	356,793	" 253	金 順 玉
378-8	3 ¹⁴	31,252	新村洞96-4	河 有 植
367-10	11 ¹⁰	81,407	二村洞296	崔 學 任
416-47	2 ⁸²	32,038	合并洞264	金 壽 榮
384-21	2 ⁹⁰	15,773	" 262	李 龍 煥
387-14	14 ⁹¹	131,164	" 276	金 鳳 根
380-7		1 ⁹⁰	33,172 昌信洞580-2	金 善 濟
384-1	0 ⁸⁴	6,375	合并洞263	金 益 俊
385-6	3 ⁹⁰	26,267	" 285-45	桂 淳 淳
359-13	2 ⁷⁴	16,009	" 45-6	宋 普 煥
西橋洞321	4 ⁷⁸	59,980	西橋洞32-1	金 慶 福

西橋洞368-7	128 ¹²	1,681,578	" 131	金 鴻 彬
" -15			" 133	姜 長 福
合併洞325-1	0 ²²	16,947	龍巖洞105-3	朴 龍 姪
" 383-16		4 ⁶⁰ 64,244	合併洞245-13	金 炳 洙
" -19			" 27-4	金 興 天
" 303-3		4 ¹⁵ 37,207	滄川洞52-46	孫 奉 熙
" 364-3	7 ²⁰	62,904	東橋洞32-15	金 基 玉
望遠洞190	1 ⁰⁰	12,955	安岩洞104-183	丁 仁 杓
東橋洞32-15	6 ⁷⁰	98,141	金湖洞1110	咸 龍 興
" 178-4	2 ⁵⁴	32,742	東橋洞32-6	金 永 淑
" 179-7	4 ³⁶	67,517	119,558 倉前洞2-10	廉 次 子
" -19			29,160 三仙洞2-350	金 基 五
" 180-8	1 ⁷³	20,779	乙支路3가116	李 重 星
" 156-4		4 ⁶⁰	東橋洞325	黃 斗 榮
" 177-21		2 ¹⁷	城北洞240	李 天 永
合併洞381-1				
" -26				
東橋洞180-1				
合併洞387-4				

◎서울특별시공고제21호

신당, 청량리, 면목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 연기 공고
 서울도시계획사업 신당, 청량리, 면목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일부 구역에 대한 잔구 처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하고 합니다.
 관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종람에 공합니다.

1963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사업 기간 연기 조서

사업지구명	연기된면적	당초준공예정일	연기준공일
신 당 지 구	130,000평	66. 12. 31	69. 12. 31
청 량 리 지 구	332,805 "	66. 12. 31	"
면 목 지 구	342,029 "	66. 12. 31	"

→

7317
112
149

7578

광고


관인개인에 따른 공고

1. 당구 구청장 직인을 별첨 인영과같이 개인하고 관인규정제12조에 의거 관보(시보)제재를 의뢰합니다.

2. 관인공고내역

기 관 명	비치기관	사용개시일	비 고
영등포구청장	총무과비치	68.1. .	
영등포구청장	시민봉사실비치	68.1. .	

관 인 인 영

기 관 명	비 치 기 관	사 용 개 시 일	인 영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총무과	68. 1.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시민봉사실	68. 1.	